

89-32

보관용

보관용
(관리과)

日本の戰后軍閥에 關한 研究

주요내용

1969. 12

嶺南大學校
韓日關係研究所

조
소



日本の 戦後 軍閥 동태에 관한 연구

차 례

머 리 말	1
I. 日本軍閥의 역사적 고찰	3
1. 日本建軍의 기초와 그 정신	6
2. 軍閥化의 要因과 明治軍閥의 성격	9
3. 大正軍閥의 동태와 성격	13
4. 大正軍閥의 특색	15
5. 昭和軍閥의 성립	16
6. 昭和軍閥의 동태	17
7. 昭和軍閥의 성격	22
II. 戦後 軍勢力의 동태	27
1. 旧軍閥의 해체	29
2. 再建備와 新軍勢力의 형성	34
3. 새로운 軍隊・自衛隊	44
4. 새로운 軍勢力의 성격	56
III. 戦後 日本의 財閥	65
1. 戦後 日本의 財閥解体	67
2. 財閥解体의 終結	72
3. 經濟自立化 過程과 財閥	74

4. 企業集團 = 콤비 나드	94
5. 軍需産業과 財閥	97
Ⅳ. 日本의 國防政策	105
1. 國防政策 決定過程	107
2. 1次 - 3次 防衛計劃의 분석	108
3. 各政党的 政策比較	115
4. 1969年度 國防白書	120
V. 韓國 國防 外交政策의 方向	131

머 리 말

「전후 日本軍閥의 動態에 關한 研究」과제에 대하여 本研究所에서 研究班을 構成하고 研究한 결과 不充分하나 結論은 얻었기에 이를 論文으로 作成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이번과제를 研究하는 過程에서 경험한 몇가지 애로사항을 지적하므로써 이 研究의 미흡한 점을 弁명하는 바이다.

1. 戰後 日本에 關한 研究 特히 軍閥에 關한 研究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무한상태에 있기 때문에 國內의 研究성과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
2. 이에대한 日本側의 研究결과는 많이 있으나 이를 자유롭게 구득할 수 없고 특히 최근의 資料는 더욱 구득하기 어렵다는 점
3. 資料의 未備와 아울러 研究期間이 너무 짧아서 구득한 文헌을 전부 이용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연구원간의 討議할 機會가 적어 유기적인 一貫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4. 研究費는 文獻 資料 購入費에 대부분이 充當 되었으므로 研究원에 對한 研究費 支給이 너무 小額이어서 研究원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위에 열거한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들의 能力不足도 作用하여 研究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概觀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을 크게 謝過하는 바이다.

앞으로 本研究所에서는 이 과제를 繼續적으로 研究하여 國家政策過程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배가의 努力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으

니 앞으로도 本研究所 研究에 對하여 積極적인 支援있기를 바라
다지않는 바이다.

정신 醫學 科 內 科 長 李 錫 勳

I. 日本軍閥의 歴史的 考察

日本の 戦後 軍閥 動態에 関한 研究題目下에 日本 旧軍閥의 戦後 再編趨勢와 그것이 新 軍勢力形成에서 차지하는 地位를 考察하고 軍勢力이 戦後 日本의 發展에 어떻게 作用하였으며 国防政策에 끼치는 影響력을 분석 검토하여 그것이 国内政治 經濟面에 어떻게 作用 하였으며 日本의 아시아政策 樹立方向에의 寄与度를 測定하여 韓国の 国防外交政策의 方向을 提示하기 爲하여 戦後 新 軍勢力의 生態와 動態를 分析 檢討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日本의 旧軍閥의 歴史的 生成過程을 序論的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日本の 軍閥을 歴史的 生成過程에서 考察하면 明治維新을 계기로 하여 近代的인 建軍의 基礎가 確立되었고 清日, 露日 兩 戦争을 通하여 확대 강화되었고 軍閥의 政治外交面에 있어서의 發言權도 强대하였으나 政治指導者와 軍指導者가 明治維新의 中心人物이요 또 有功者들이었기 때문에 兩指導者幹部間에 마찰없이 日本의 近代化와 国力培養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軍勢力의 확대 강화는 필연적으로 軍의 政治干与를 가져와 軍閥 官僚가 등장함에 이르러 軍閥의 확고 부동한 체제가 갖추어 졌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日本의 政治 外交政策의 主導權을 장악함 에 이르렀다. 이것이 곧 日本의 軍閥이다. 明治에서 大正 年間に 이르는 時期는 長州藩의 山県有朋 元帥가 영도하는 軍의 勢力이 軍과 政治 外交를 支配하는 軍勢力 即 軍閥로 成長하였다. 山県 死後 이 勢力에 대한 반발은 政治面에 있어서는 民權運動으로 軍

勢力에 있어서는 山県体制에 대한 軍指導体制 改革運動으로 나타났으나 결국 統帥權 問題와 國家危機說을 들고나와 軍의 政治支配를 強力히 주장한 새로운 軍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곧 昭和軍閥로서 이들은 國體明徵을 대외 侵略으로 解決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軍閥의 歴史的 形成過程과 그 성격을 理解하지 않고서는 戰後 軍勢力의 生態와 動態를 理解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項目을 設定하여 이를 序論적으로 考察하고자 하였다.

1. 日本 建軍의 基礎와 그 精神

日本 建軍의 基礎 또는 建軍의 本義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明治憲法 第11條의 「天皇은 陸海軍을 統帥한다」는 規定—— 이 規定은 憲法學上 兵權獨立主義를 天皇制에 결부시켜 擴大 해석함으로써 政爭의 불씨로 利用했을 뿐만 아니라 日本軍閥을 獨走케 한 가장 核心的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規定은 日本建軍의 基礎 또는 建軍의 本義였을 뿐만 아니라 日本軍閥의 基礎이며 本義였던 것이다.

(2) 軍人勅諭(明治 15年 1月 4日)—— 이 勅諭는 憲法學上 兵權獨立主義的 差別主義에 根拠하여 軍人の 政治的 中立을 規定한 것이다. 그러나 이 差別主義는 兵士에게만 強要되었을 뿐 軍指導部에서는 도리어 그 精神을 유린하고 軍의 政治干渉를 敢行하여 軍閥化에 박차를 가하였다.

(3) 全國徵兵의 詔書(明治 5年 11月), 徵兵制 —— 이 詔書는

天皇의 軍隊라는 이름 아래에 全國民을 軍隊로 組織化 하였다.
이것이 곧 日本 建軍의 人的基礎가 되었다.

위에서 열거한 建軍의 基礎는 建軍以後 軍部 軍人이 外部勢力
(政黨, 內閣, 樞密院 等)과 어떤 問題로 충돌하거나 鬭爭을 展開
할 때 「建軍의 基礎를 위태롭게 하고」또는 建軍의 「本義에 의거
하여」라는 말로 對抗하는 근거가 되었다. 즉 憲法의 규정은 제
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無限하게 확대해석된 「統帥權」의 발상을
군인에게 심어주고 「勅諭」는 軍이 곧 日本帝國이란 同心圓을 그
리면서 군인은 政治界나 財界人士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보
다도 특별한 지위에 있고 특히 独自の 사명을 가진 엘리트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구조 속에서 일본의 군세력이 점차 軍閥化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建軍의 기초와 本義에 의하여 일본의 建軍은 明治 5
년 11월 全國徵兵의 詔書가 내리고 明治 6년 1월 10일 徵兵令이
공포됨으로서 성립되었다.

그 경위를 년차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868.10 (明治 1) 明治維新 성공, 伊藤博文의 「御親兵計劃」
· 總策

1869.10 (明治 2) 大村益次郎의 프랑스식 新 육군 구상 -
大村은 明治建軍의 시조 長州軍의 참모장. 明治政府의 초대 兵
部大輔 (군무대신에 해당)

1870 (明治 3) 徵兵制 實施를 위하여 西郷從道 (薩摩藩) 山県有朋

(長州藩) 프랑스 파견

1871.2 (明治4) 御親兵조직 결정, 兵力 4,000 (明治初年 400
의 10배) 西郷隆盛 (薩摩藩) 초대장관 同 6월 兵部省 직할 兵
團司令部 설치 御親兵과 도합 육군 總兵力 11,600 (明治初
年の 약 30배)

1872 (明治5) 御親兵을 近衛兵으로 개칭 (西郷隆盛가 都督이
됨) 徵兵論争의 전개 ①징병반대파 - 주로 薩摩軍 ②徵兵漸進
論派 - 주로 정부요인 (參議 木戸孝允, 陸軍少將, 兵部大函=
군무국장 山田顯義) ③징병即刻 実施派 - 주로 長州軍, 兵部
大輔인 山県가 주동인물 ④山県 薩摩軍의 보스인 西郷隆盛을
실득 응압시킴으로써 징병시행을 가능케함. 同 12월 징병령 制
定

1873.1 (明治6) 징병령 公布

日本の 建軍은 위에서 열거한 경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다소의 알력은 있었으나 순조롭게 短時日 内に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그 理由は 무엇이였을까?

(1) 明治維新이 薩摩, 長州 兩藩의 병력을 基幹으로 하여 성
취되었다는 점 (일종의 무력혁명)

(2) 明治維新 정부의 國策이 開国外交와 軍備充實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

(3) 明治維新 정부의 元老級 지도자가 憂國 愛國의 至誠에서
일치 단결하였다는 점

(4) 民間 憂國志士와 학자들이 開國近代化에 적극 參與하였다는
점

(5) 明治維新 정부內에 先覺的인 軍지도자가 領導力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日本 建軍의 기초와 本義에서 이미 軍國化할 要因을 內包하고 있었으나 建軍 당초에 있어서는 建軍理念을 같이 하는 同志的인 입장에서 建軍하였기 때문에 短時日內에 近代적인 國軍으로 조직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國家의 基礎가 서고 安定되어 감에 따라 建軍精神이 亂動하기 시작했고 山縣有朋의 政兵兩權의 장악은 軍閥의 기초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明治軍閥의 시작이다.

다음에 明治軍閥의 性格과 軍閥化의 要因을 고찰하고자 한다.

2. 軍閥化의 要因과 明治軍閥의 성격

日本 陸軍의 軍閥化는 建軍의 주체세력이었던 薩摩, 長州 兩軍의 지도자 특히 長州의 山縣有朋가 政兵兩權을 장악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물론 그 배후에는 建軍의 정신과 天皇의 軍隊라는 강한 의식과 國家의 엘리트라는 우월감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軍閥化의 要因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參謀本部의 설치 - 明治7년(1874) 독일에서 돌아온

桂太郎(長州 출신, 山縣系, 육상, 수상 역임) 대위가 山縣에게

「參謀部는 특별임무로서 軍行政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건의에

의하여 明治7년 2월12일 陸軍省으로 부터 參謀局(초대 참

모국장 山縣)이 독립되고 明治11년(1878) 12월5일에는

參謀局이 폐지되고 새로 이 參謀本部가 창설되었다. 이후 參謀本部의 기구, 직제가 변천하였으나 桂大尉의 建言에 있는 「參謀部는 특별임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전 육군의 역사를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明治維新 政府의 발족 때부터 「兵權獨立主義的 差別主義」를 建軍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다.

軍統帥의 기관과 일반 國務와의 관계, 군인의 정치적 中立의 원칙에 관한 憲法學上의 두개의 학설 중 兵權政從主義的 差別主義나 兵權獨立主義的 差別主義가 있으나 建軍의 기초를 후자에 두었기 때문에 兵權의 獨立(統帥權 독립)이 강조되고 그것이 制度化하여 군벌의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즉 兵權獨立主義는 도리어 權力의 均衡을 군부에 유리하게 만들었고 差別主義(軍人の 政治的 中立의 원칙)는 兵權獨立의 形式에 있어서의 군인의 (조직적 즉 군부로서의 形式, 군사기관으로서의 형식에 있어서) 정치 干渉를 가능케 하였다.

(2) 軍部大臣現役制 - 이 制度는 軍部大臣留任制와 아울러 軍의 中立主義를 방패로 一般行政에서 軍部大臣의 獨立 超然의 地位를 가져와 軍閥化의 制度的 保障이 되었고, 軍國 옹호의 철벽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軍閥化의 제 2의 要因이다.

憲法 제 11 조와 「勅諭」에 정착한 日本 陸軍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대한 정치상의 전제된 中立主義(軍人の 政治不干涉主義)는 그 제정에 최초부터 참여한 山縣 본인에 의하여 유린되었다. 즉 모든 정치문제는 국가분제로 濫元되고

또 국가문제에 還元되어 가는 정치문제의 최후는 統帥權에 收斂되어 간 것이다. 그것은 日本 최초의 內閣인 제1차 伊藤內閣에 內務大臣으로 入閣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

[明治18년 12월 22일 (1889)] 內務大臣은 日本 國內의 政치를 장악하는 오늘 날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建國의 기초를 세우고 초미 參謀局長으로서 陸軍의 職歷을 스타트하고 「軍人訓誡」의 制定者이요 長州閥의 보스인 山県가 內務大臣이 되었을 때 후년의 陸軍의 軍閥化가 스타트했고 軍과 政治의 緊密關係가 결정되었다.

이리하여 山県有朋 - 桂太郎 - 寺内正毅 - 田中義一 로 연결되는 長州閥의 明治軍閥이 성립되고 陸軍 80년의 역사 중에서 50년을 지배했던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軍閥化의 要因의 하나인 統帥權 獨立은 「特別任務」를 가진 參謀本部로 具現되고 둘째의 要因인 政治的 中立主義는 軍閥擁護의 철벽이 된 軍部大臣現役制, 軍部大臣留任制로 나타나고 그 出發點은 山県가 內務大臣으로 入閣한 1885년 (明治18)이다.

이러한 기초위에 明治 軍閥은 淸日, 露日 兩戰을 통하여 肥大化하였고 확고부동한 軍世력을 구축하였다.

다음에는 明治軍閥의 성격을 분석한다.

明治維新이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王政復古 즉 天皇制의 부활이었다.

다시 말하면 幕藩정부가 장악하고 있었던 政權과 兵權을 同時에 天皇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薩摩, 長州출신의 정객과 군지자가 주동이 되어 무력적으로 일으킨 정치혁명의 성격은 띄고 있다. 그러므로 幕藩体制를 조속히 타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支配体制가 강행되어야 했고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무력 즉 군비가 필요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일본군의 창건이 무엇보다도 먼저 요청되었고 그러한 상황 조건하에서 일본의 근대적인 建軍이 短時日內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建軍의 정신은 天皇制日本帝國의 建國精神과 일치되는 것이다.

明治憲法 제 11 조, 軍人勅諭 등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는 建軍의 本義가 바로 兵權獨立主義的 差別主義이고 그것이 제도화 조직화한 것이 곧 「特別任務」를 띤 參謀本部의 獨立이요 軍部大臣 現役制, 軍部大臣 留任制 등이다. 이러한 정신구조는 국가 엘리트로서의 군인의 優越感을 조장하고 정치문제를 國家問題化함으로써 군부의 정치간여를 합리화하고 정치적 지배를 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建軍의 기초나 本義에서 볼 때 建軍 당초부터 군세력이 軍閥化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고 또 그것이 조직제도의 정비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建軍 당초의 政客이나 군인이나 또 일반 국민에 있거나 明治 新國家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또 明治政府

의 要人들이 憂國 愛國으로 헌신적 노력과 단결로 신국가 건설에 매진하였기 때문에 정부와 軍部間에 큰 마찰없이 短時日內에 근대적 국가를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

天皇 支配體制 정비작업에 專心하였기 때문에 준 본연의 자세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山縣有朋의 政治活動에 구현된바와 같이 軍人의 政治的 中立主義는 유린되고 統帥 權獨立만을 견지함으로써 軍의 第一位性을 내세우는 이른바 軍中心主義的 성격은 되게되고 이것이 淸日 露日戰爭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從來의 尊王 攘夷를 對外侵略으로 改筆한 國粹主義的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성격은 昭和軍閥에 까지 綿綿히 흐르고 있다.

3. 大正軍閥의 동태와 성격

明治軍閥 成立후 淸日, 露日전쟁의 승리로 肥大化하였으나 數次에 걸친 對政黨抗爭과 軍閥의 元老 山縣有朋의 죽음을 계기로 明治軍閥은 변질하여 새로운 軍閥 즉 大正軍閥이 성립하였다.

大正軍閥도 長州閥의 田中義一, 宇垣一成, 南次郎에 의하여 영도되었으나 明治軍閥과 같이 공고한 기초를 세우기 전에 流散되고 말았다.

- (1) 大正軍閥의 동태 - 大正軍閥은 田中義一가 山縣有朋의 후계자로서 등장했을 때부터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表面化된 것은 田中가 原敬內閣의 陸相으로 入閣한 이후이다. 그후 田中 宇垣一成 加藤友之郎 3자가 軍政의 主導權을 장악했을 때 大正軍閥은 그 절정에 달했고 宇垣가 南次郎에게

陸相을 물려주고 退陣했을 때 大正軍閥은 昭和軍閥에 의하여 否定되었다.

大正軍閥의 동태를 사건별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① 軍部大臣 現役制에 대한 政爭

② 軍縮을 위한 政爭

③ 薩長の 抗爭

다음으로 압축할 수 있다. ①의 문제는 明治38년(1900)

新官制에서 軍部大臣 現役制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軍費 増師問題로 対立된 政黨과의 抗爭은 계속되어 고질화하게 되었다.

大正元年(1912) 12月 増師政變을 계기로 軍閥對政黨의 抗爭은 재연되고 大東亞戰爭時 전장각 승리할 때까지 실로 30여년간 지속되었다. 大正2年(1913) 3月 山本權兵衛內閣은 政黨과 軍閥의 원부였던 軍部大臣現役制 폐지는 軍部の 一大공격을 받았다.

長州閥의 寵兒 木越安綱陸相의 斷乎한 決意로 일단락을 지었으나 그 배후에 反軍閥的인 國民의 여론과 政黨의 憲政 擁護가 있었음을 着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후에도 그 여파가 政爭의 불씨가 되었으나 이것을 계기로 長州軍閥의 철벽의 일각이 무너지고 長州軍閥에 대한 反對勢力도 점차 성장해갔다.

②의 문제는 大正10年(1921) 이후 昭和5年(1930)

에 이르는 軍縮을 계기로 빚어진 政爭으로서 日本軍閥史에

큰 영향을 주고 日本政治史를 크게 흔들어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大正11·12年の 陸相山梨半造의 2次에 걸친 軍縮小, 大正14年の 陸相宇垣一成의 4個師團縮小 등으로 軍의 反撥은 最 高조에 달하였다. 특히 宇垣軍縮은 큰 파문을 던졌을 뿐 아니라 후세 昭和軍閥의 길을 마련해준 결과가 되었다.

宇垣軍縮의 특색은 ㉠軍事教練을 실시하여 學生層을 軍事的으로 조직화하고 그다음 國軍의 幹部로 삼아 國防의 基底를 공고하게 할 目的 ㉡이렇게 함으로써 과잉장교 처리후의 장교보충이 용이하다는 점 ㉢인건비를 절감하여 軍장비의 근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교의 정리는 결과적으로 청년장교의 반발을 크게 사고 나아가서 宇垣의 정치 생명까지도 앓아가 軍에 있어서의 下剋上의 풍조와 청년장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음모가 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昭和軍閥이 생성 발전한 것이다.

4. 大正軍閥의 특색

明治軍閥은 政黨과의 政治的 대립과 抗爭과정에서 점차 변질하였고 明治말년에서 大正초기에 이르는 日本政黨의 성장, 民權運動의 팽배 軍에 대한 國民 여론 軍의 근대화 등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 大正軍閥이다. 그러므로 大正軍閥은 軍閥기초의 하나인 軍部大

臣現役制를 否定하면서 까지 政黨세력과 밀착하여 軍官僚化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明治軍閥을 否定하고 昭和軍閥에의 길을 열어 준 과도적인 軍閥의 역할을 했음에 불과하다.

여기에 大正軍閥의 새 모습과 특색이 있는 것이다.

大正軍閥의 특색을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合理的 軍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①軍閥主義의 부정이고 ② 軍部の 특권을 이용하여 軍의 이익을 도모하는 慣行의 부정이다. 이것은 軍部大臣現役制의 修正 軍縮의 強行, 護憲政黨과의 제휴 등에서 구현되었다. 이와 같이 大正軍閥은 政黨勢力과 世論의 움직임을 통찰하고 종래의 인습적인 陸軍의 특권아성을 고수하는 사상에서 脫皮하였기 때문에 大正軍閥로서의 특색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海軍閥과의 협조면에서도 明治軍閥이나 昭和軍閥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색이고 또 이것이 大正軍閥을 合理的 軍閥의 성격을 가지게 한 요인도 된 것이다.

5. 昭和 軍閥의 성립

정치적 中립주의와 統帥權獨立이 山泉有朋의 정치행동에 구현된 바와 같이 군인과 정치는 建軍 당초부터 이미 모순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더욱기 軍部大臣의 副書를 필요치 않고 軍令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昭和軍閥의 동향은 이미 建軍 때 싹트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昭和軍閥은 一朝一夕에 된 것이 아니라 明治建軍이래 군내부에 면면히

※ 흐르고 있는 군벌적 요소가 최후 발악적으로 나타난 형태에 불과하다.

그러나 政黨정치시대 軍縮시대를 배경으로 새로운 양상 즉 軍國主義를 부정하고 軍의 특권을 削減하는 방향에서 형성된 大正軍閥은 軍閥로서 성장 할 수 없는 자가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

그 모순을 단번에 극복하고 軍이 곧 국가의 등식을 다시 살려 강력한 軍의 정치지배를 피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日本의 세계지배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 昭和軍閥이다.

6. 昭和軍閥의 동태

日本군대 육군의 학교가 오랜 세월에 만들어 온 특수한 제도, 관습, 군인이 서로 품은 감정, 建軍의 처음 부터 정신과 조직 (이것을 결부시키는 것이 軍律)이 점차 분열되어 가는 위기를 統帥權이라는 해석이 두 가지 될 수 있는 天皇大權이 포섭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본바와 같다. 이것을 기초로 하고 배경으로 하여 昭和軍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갔는가를 그 변천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1) 陸大出身 엘리트의 동태 - 昭和군벌의 움직임에 있어서

陸大出身의 省部 엘리트가 점차 陸軍軍內를 제과하고 일국의 국책을 품의 國防國家, 國家總動員體制로 정비, 현출하는 준비를 한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省部の 要職, 사단장, 여단장을 陸大出이 독점하고 동시에 陸軍이 軍事課 一軍務局을 중심으

로 중요 국채를 안출하고 參謀本部가 國防政策의 개정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예컨대 滿洲事變, 滿洲國승인, 在滿機構개혁문제 등 중요문제의 처리가 군부의 독주적 처리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昭和軍閥은 성장했던 것이다.

明治憲法은 국민이 가진 정신, 신앙, 도덕을 전부 天皇(統帥權的 天皇)에, 국가의 國事一般은 元首로서의 天皇(機關說的 天皇)에 一任한다는 권위와 권한의 최고 밸런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昭和10年(1925)에는 당시 無血쿠데타라고 불리워졌던 天皇機關說問題=國體明徵運動이 일어나고 전자의 統帥權的 天이 後者の 機關說的 天皇을 압도해버린 중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진행과정에서 우선 陸大出 엘리트의 움직임을 그 集團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二葉會 ㉠파벌의 해소 ㉡人事刷新 ㉢軍制改革 ㉣總動員態勢 등을 목적으로 결합된 佐官級비밀집단, 大正10년 陸大 15~18期生 중심으로 발족, 昭和一 들어와 25期까지 포섭 활발한 활동, 중심인물, 16期生, 永田鉄山, 小畑敏四郎, 岡村寧次.

② 一夕會 ㉠陸軍의 人事를 刷新하여 諸政策을 강력히 推進할것,

㉡滿蒙問題의 해결에 중점을 둘 것,

㊦ 荒木貞夫, 真崎甚三郎, 林銑十郎의 三將軍을 擁립하면서
 올바른 陸軍을 再建할 것 등을 목적으로 결합된 佐官級
 특히 軍事課課員 중심의 集團, 昭和3년 陸大21期生 鈴
 木貞一, 石原莞爾 등을 중심으로 발족 25期生까지 포섭
 二葉會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짐.

- ㉓ 桜會 - 昭和5년 橋本欣五郎中佐(23期) 중심으로 坂田
 義朗中佐(21期), 樋口季一郎中佐(21期) 등에 의하여
 발족 33期生까지 포섭 ㉠목적 - 本會는 國家改造를
 宗國의 목적으로하고 이를 위하여 必要하다면 무력行使도
 不辭함. ㉡會員 - 現役陸軍將校中에서 계급은 中佐以下
 國家改造에 관심을 가지고 私心없는 자에 한함.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들의 움직임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 ① 陸軍内の 과별해소 - 이것은 陸軍部内の 統一을 추구하
 고 그 힘을 對外투쟁에 집결하여 軍縮에 상징되는 軍의
 실지회복을 하고자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② 滿蒙問題해결에 중점 軍의 실지회복을 對外侵略에 구하
 고저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③ 國家改造論 군의 永久한 國家지배를 목적으로한 野心에
 서 나온 것이다.

(2) 陸軍의 暴走(네개의 事件) 昭和6년(1921) 3월에서
 7년 5월까지 군인과 右翼이 결행한 또는 결행하고자한 네
 개의 큰 國內事件이 일어났다. 3月事件, 10月事件, 血盟
 團事件, 5.15事件이 그것이다. 이 네개의 사건을 중심

으로 陸軍暴走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 3月事件 이 事件은 宇垣陸相을 內閣首班으로 추대하고 단번에 國內改造를 斷行하고자 桜會 中心人物 橋本中佐를 중심으로한 青年將校와 大川周明 등 右翼民間人이 計劃한 未發彈의 구테타이다. 宇垣의 變心, 眞崎永田의 反對 등으로 失敗하였으나 이것이 남긴 후유증은 매우 컸다.

우선 軍部內的 統帥의 위신을 문란케했고 과별의 分爭을 격화시킨 화근이 되었다.

그리고 永田文書(구테타計劃書)와 그의 刺殺로 軍內派閥 싸움을 정점에 까지 올려 놓게 하였다. 또 軍部가 3月事件에 끼친 作用은 永田文書의 存在와 昭和11年の 宇垣內閣 流散으로 나타났다.

(2) 10月事件(錦旗事件) 이 事件은 軍人을 中心으로(桜會의 橋本)하고 民間右翼의 一部가 참가하여 계획된 구테타이다.

昭和6년10월 肅正 경 사건에 발각되어 未遂에 그쳤으나 3月事件과 같이 軍部는 이 事件을 外部에 極秘에 부치 버리고 말았다. 이 事件은 3月事件과 달라 國內改造를 위한 武力的 政權 탈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事件은 그 후 史家에 의하여 日本 軍 과시즘의 효시로서 크게 다루어졌다.

이 事件의 영향은 事件담당자들이 경미한 처벌에 그치었기 때문에 같은 事件이 속출할 가능성을 내포하였고 또

속출되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軍人の 橫暴를 正当化하고 군의 獨走를 용인한 결과를 가져왔다.

(3) 血盟團事件 이 事件은 昭和7年2月9日 밤 井上準之助(民政黨 副總裁格前大藏大臣)와 團琢磨(三井合名 理事長)를 射殺한 두개의 暗殺事件을 말한다.

民間人 井上日召를 중심으로하는 血盟團員과 改造運動에 뜻을 가진 青年將校(隊付將校)과의 結合에서 이루어진 國家改造를 위한 혁명적 거사였다. 이 事件은 失敗한 軍政 지도에 의하여 지배된 國家를 改造하고자 일어난 軍과 영향하는 民間세력이 대두하였다는 것을 나타낸 점에서 日本軍國主義的 과시즘의 뿌리가 民間에 까지 뻗혀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4) 5.15事件 이 事件은 昭和7年5月15日 저녁에 總理犬養毅가 海軍士官의 一團에 의하여 射殺된 政府要人 暗殺事件이다. 이 事件은 血盟團事件의 연장에 불가하다.

위에서 본 네개의 事件이후 昭和軍閥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昭和11年 2.26事件을 계기로 절정에 달하였다.

그 사이에 황도파와 통제파의 對立, 永田對 小畑의 對立, 昭和9年11月20日의 士官學校事件 真崎教育總監更造問題와 統帥權干犯問題, 永田軍務局長의 射殺事件 등을 계기로 建軍의 기초가 위태롭다는 구호아래 2.26事件이 발발하였다. 이 反亂을 계기로 永田, 小畑, 岡村의 新陸軍建設의 꿈은 깨어지고

투쟁은 이 終幕에서 다음 단계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昭和군벌의 영도하에 國防外交政策이 이루어졌고 군인을 戰爭에 붙여넣고 軍의 지배를 永続시키기 위하여 昭和維新을 大義名分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軍閥의 妄動과 派閥싸움이 결국 日本을 敗亡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日本국민의 원부가 되고 人類의 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패전 후 聯合軍에 의하여 軍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軍閥도 자연 消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80년의 역사를 가진 日本軍閥의 전통 특히 그 의식이 一朝一夕에 무너질수는 없으나 그것이 과연 自衛隊라는 現 軍組織과 기능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기초로한 새로운 군벌이 形成될 수 있는냐의 문제는 다음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7. 昭和군벌의 성격

昭和군벌은 大正 後半의 軍縮의 反動으로 대두되었으나 軍閥을 영도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陸軍을 統制하지 못하고 陸軍暴走를 抑制하지 못하였다.

明治軍閥에는 大山, 兎玉 등 統制力을 가진 영도자가 있었고 大正군벌에는 田中, 宇垣가 있었으나 昭和의 反動復興(昭和維新) 時代에는 統制力을 가진 將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大.中佐級の 幕僚에게 實權을 빼앗기어 그들의 過誤를 시정키는 커녕

그들의 괴뢰가 되었다.

즉 昭和군벌은 頭目이 없는 群衆의 軍閥이었다. 이른바 下上의 군벌이었다.

統制가 없는 군벌이었기 때문에 血氣가 많고 自制力이 없고 反省이 없고 政治를 좋아하고 國策을 움직여 국가와 국민을 한꺼번에 劍谷의 深淵으로 몰아 넣었던 것이다.

한편 軍縮으로 인한 軍人の 敗北心理는 그들의 再起를 위하여 臥薪嘗胆으로 그 시기의 到來를 기다렸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政党内閣에서 發生한 汚職事件은 政治의 부패를 是正一新 하라는 여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世界的 불경기의 영향을 받은 日本 경제는 농촌과 어촌의 생활을 위협하여 貧困의 구렁텅이로 빠져 이것을 구제하기 위한 庶政의 일신을 주창한 右翼운동은 오랜 불우속에서 비운의 정을 抑制해 온 一部 中堅將校에 点火되어 국가개조를 自己 사명으로 착각한 일부 將校가 二葉會, 一夕會, 桜會 등 비밀정치단체를 조직하고 폭은 3月事件, 10月事件, 5.15事件, 2.26事件을 일으켜 반발행동을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大東亞건설이라는 망상하에 對外侵略을 자행하였다. 여기에서 昭和 陸軍의 暴走의 배경과, 國家改造, 大東亞건설이라는 그릇된 使命感, 侵略主義的, 軍國主義的 과시즘의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明治軍史，上下卷，原書房，1966
2. 木戸幸一日記，上下卷，東京大学出版会，1966
3. 現代史資料，大本營，稻葉正夫編，みすず書房，1967
4. 山県有朋意見書，大山樸編，原書房，1966
5. 山県有朋，岡義武著，岩波新書，1958
6. 軍国日本の形成，福地重孝著，春秋社，1959
7. 宇垣一成日記，みすず書房，1968
8. 現代史資料，国防主義運動 I. II. 高橋正衛編，みすず書房，1964
9. 兩園寺公斗政局，原田熊雄述，岩波書店，1950
10. 軍閥興亡史，伊藤正男著，文芸春秋社，1958
11. 昭和陸軍史，中村菊男著，番町書房，1968
12. 軍과시금運動史，秦彦著，河出書房，1962
13. 2.26事件，高橋正衛著，中公新書，1965
14. 滿洲問題와 国防方針，角田順著，原書房，1968
15. 橋本大佐의手記，中野稚夫著，みすず書房，1963
16. 石原莞爾料，国防論争，角田順編，原書房，1967
17. 政治와 軍人，森五六著，日本評論社，1936
18. 現代史資料，滿洲事變，小林島田編，みすず書房，1964
19. 血盟団事件公判速記録，1967~1968

20. 陸軍軍需動員 I. 計劃編，防衛庁戦史室著，1967
21. 現代史資料・日中戦争 I. II. 島団，稻葉編，みすず書房，
1964～1965
22. 枢密院重要議事覚書 榑井英五著，岩波書店，1953

Ⅰ 戰后軍勢力の動態

전후 日本 旧軍閥의 해체 1950년을 起点으로 새로 대頭한 新軍勢力 一自衛隊 포함一의 動態에 관한 分析 특히 旧軍閥 내의 旧軍人과 새로운 軍과의 關係狀況 分析은 대단히 重要한 일이다。

1. 旧軍閥의 해체

日本の 旧軍閥은 전술한대로 長期間에 걸쳐 형성되어 戰前에는 日本 軍國主義의 주도勢力이었다. 따라서 美國의 第二次大戰의 終了와 함께 日本 占領政策의 첫 과제는 旧軍閥의 해체와 함께 日本의 非軍事化였다. 勿論 그와같은 內容의 占領作業은 美國만이 아니라 軍國主義 日本의 과거의 犯罪를 알고있는 聯合國의 政策決定에 있어서의 共通的인 政策 表現이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旧軍閥의 해체와 가장 關聯있는 것은 바로 美國의 對日 初期政策이다. 美國은 日本占領의 目的을 두가지로 設定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前述과 같이 하나는 日本의 民主化요 다른 하나는 日本의 非軍事化요 民主化라는 두가지 基本 목적은 바로 占領政策의 根幹이 되어 日本에서는 旧軍閥의 해산과 함께 旧軍閥도 자연스럽게 解体될 수 밖에 없었다.

(2) 일본의 非軍事化 그것은 占領이 始作된 直後인 9월 2일 GHQ의 指令 제 1호 翌日の 指令 第 2号에 따라 急速度로 進行되었는데 그 重要내용은 다음과 같다。

- 日本内地의 陸海軍軍人의 全員 復員
- 日本内地 部隊의 武装解除 및 復員・本國送還

- 在外部隊의 降服・武装解除 및 復員・本国送還
- 兵役法・国家保安法・軍事保護法・軍團資源秘密保護法・要塞地帶法・陸海軍刑法等 軍事法令의 폐지
- 軍事品 生産의 禁止
- 民間武器의 禁止
- 大本營・參謀本部・司令部・教育總監部・陸海軍省 등 軍事機關의 폐지
- 戰時行政機構・戰時立法・戰時 또는 軍事的 團體등의 폐지 또는 解散
- 軍人의 公職追放・教職追放・戰犯容疑者의 逮捕・裁判・処刑 등

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非軍事化 措置 旧軍閥의 모든 活動根拠를 完全히 排除시킨 措置라 할 수 있다。

(3) 이 밖에도 非軍事化를 통한 旧軍閥의 排除, 해체에 關聯된 指令이나 覺書가 占領初期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主要한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 聯合國 最高司令官의 權限에 관한 맥스웰元帥에의 通達 (1945.9.6)
- 降服후에 있어서의 美國의 초기의 對日方針 (1945.9.22)
- 政治警察 廢止에 관한 覺書 (1945.10.4)
- 日本占領 및 實現을 위한 聯合國 最高司令官에 대한 降服후에 있어서의 초기의 基本的 指令 (1945.11.1)
- 聯合國의 日本占領의 基本的 目的과 聯合國에 의한 그 달

성 方法에 관한 백元帥의 管下部隊에 대한 訓令

(1945.12.9)

- 軍國主義的 인물의 公職能免, 排除에 관한 覺書 (1946.1.4)
- 政黨 기타 諸團體 戒지에 관한 覺書 (1946.1.4)
- 降服後의 對日 基本政策 (1947.6.19)

(4) 旧 軍閥의 해체와 關聯있는 事實의 하나는 戰爭犯罪裁判으로 인한 旧軍閥에 대한 徹底한 斷罪였다。

전후 모스크바宣言 (1945.10.30) 聯合國 最高司令官 總司令部 一般命令 第7号 (1946.2.15) , 極東國際 軍事裁判所 手續規程 (1946.4.25) 極東軍事裁判所 條例 (1946.4.26) GHQ 一般命令 20号) 에 依拠 聯合國은 戰爭犯罪人을 斷罪하였는데 東条 를 비롯한 25 名의 戰爭主動者들은 그중 16 명이 軍人이었으며 그들의 絞首 또는 終身 禁錮형은 旧軍閥 내지 旧軍隊首領에 罪惡에 대한 一大 斷罪였다。

(5) 또한 美國은 포스담宣言 , 美國의 初期 對日方針 , 降服후의 對日基本政策 (1947.6.19) 에 따라 GHQ는 公職追放에 대한 指 令을 敍次 要求하였다。 그리고 특히 1946年 1月4日의 「軍國 主義的 人物의 公職으로 부터의 除去 및 排除」라는 G.H.Q의 覺書 , 同年 2월 28日의 포스담 勅令 , 1947年 1月4日의 「公 職에 관한 就職禁止 退職등에 관한 勅令」등에 依拠 同年 7월 2 日 該當者의 假指定이 實施되고 翌年 3월 에 完了되었는데 그 數 是 20萬 4千 3百 4名 이었으며 그중 該當者는 193,142 名으로서 결국 1946年以來 1947年 5월 까지 總計 203,660 名의 追放이 있

있다.

그 내용은 別表(1)와 같은바 대부분이 旧軍閥과의 관련자 또는 關聯職임을 알 수 있으며 軍隊가 그 大部分을 占하고 있는 것도 注目거리가 아닐 수 없다.

(6) 軍閥의 해체 또는 再起阻止를 위한 重大한 조치는 戦后 日本의 新憲法の 第9条 条項과도 關聯된다. 第9条는 戦争포기 条項으로서 勿論 이 条項設定의 責任問題가 論議되고 있지만 이 条項의 設定에는 크게 美国이 작용한것 만은 다음의 몇가지 文書나 基本事實에서 짐작될 수 있다.

- 1945년 8월 29일의 美国의 冷戰후의 对日政策에서 軍国主義 排除의 基本計劃
- 1945년 10월 17일 번즈國務長官이 맥元帥의 政治顧問인 애치슨에게 보낸 書簡
- 1946.1.7의 國務・陸・海軍省間 調整委員會(S.W.N.C.C)에 의해서 채택된 「日本政治機構改革」에서의 「軍部の 權限 또는 勢力의 消滅...」이라는 内容
- 1945.10 再軍備条項을 시사 지지한 近衛文磨와의 交渉中 断
- 1946.1.24 " 맥 "元帥와 幣原首相과의 會議(2時間)에서의 第9条의 「아이디어」가 나와(1951.5.18일의 U.S. News and World Report) 決定的으로 戦争과 軍隊 및 戦力을 금하는 憲法을 채용하게 되었다.
- 그후 憲法制定의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1946.3.6 幣原

仮指定關係（潜在追放）数

(1948.5.10 現在)

別表 1

該 当 項 目	仮指定者	異議申立者	非該当者	該 当 者
A 項戰犯者	—	—	—	—
B 項陸軍正規將校	54,185	5,733	5,239	48,946
陸軍勅任文官	48	3	—	48
海軍正規將校	26,982	3,148	2,863	24,119
海軍勅任文官	105	6	2	103
憲兵隊員	40,127	1,125	1,000	39,217
特務部員	43	—	—	43
特務機關員	865	7	6	859
C 項左익단체	3,206	365	144	3,062
D 項大政翼政会	16,913	378	207	6,706
翼賛壯年団	16,572	6,382	409	16,163
大日本政治会	14	2	—	14
其他翼賛산하관계자	141	22	15	126
翼賛体制確委	576	37	13	563
E 項海外開發기관	401	36	12	389
F 項占領地행정기관	44	4	1	43
C 項經濟관계자	936	84	27	909
報道關係者	967	243	120	849
추천의원	353	27	1	352
那軍役員	40,802	2,469	1,070	352

該 当 項 目	仮 指 定 者	異 議 申 立 者	非 該 当 者	該 当 者
武 德 會 役 員	823	142	33	790
其 他	111	1	—	111
合 計	204,304	15,699	11,162	193,142

內閣은 2 . B . G . H . Q 의 制憲草案에 약간 加筆하여 國會에
서 크게 討論된 후 1946年 10월 7일 衆議員을 10월 29
일에 參議員을 通過하여 11월 3일에 分布되었다。

이상과 같은 憲法 第9條를 위한 一聯의 制定目的 節次過程 및
그 効力은 過去의 軍閥의 해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軍閥의 내투와
發展을 금지하는 貴重한 장치가 되었다。

2 . 再軍備와 新軍勢力的 형성

전술한대로 日本의 敗戰은 곧 旧軍閥의 解体를 가져왔는데
그 主된 要因은 美國의 初期 占領政策中 日本의 非軍事化라는 基
本目的에 의한 諸般措置였고 그것을 더욱 保證한 것이 新憲法의
戰爭 및 軍力保有의 禁止條項 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旧軍隊 및 旧軍閥의 해체로 인한 日本의 非軍
事化 政策도 1948년 이후의 美의 占領政策의 變化와 1950년 한
국동란을 계기로하여 一大修正을 加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美
國의 占領政策의 變更에 따른 日本의 軍備였다。 그런데 이와같은

再軍備를 위요한 물제는 결코 한두가지가 아니나 특히 이곳에서指摘하고 싶은 것은 旧軍閥 또는 旧軍人의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軍勢力의 형성이다.

① 먼저 일본의 재군비과정을 검토하려면 美國의 對日占領政策의 變化를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占領政策에 關係되는 基本事項은 다음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 「로얄」美陸軍長官演說 (1948.1.6)
- 對日理事會 소련代表 맥元帥에 대한 答復 (1948.11.12)
- 「맥」元帥 24년 年頭辭 (1949.1.1)
- 極東委・A級戰犯裁判 終了法令 (1949.3.14)
- 「맥」元帥 憲法 第3周年 紀念演說 (1950.5.3)

② 그런데 이와같은 一連의 占領政策變更의 要因은 다음과 같은 結果를 가져왔다.

- ㉠ 10000名에 達하는 최초의 追放解除가 있게 되었고 (1950.10.13)
- ㉡ 旧軍人 3250名の 追放해제가 있었는데 (1950.10.30) 이들은 대부분 所謂 太平洋戰爭開始後에 陸軍士官學校, 陸軍經理學校, 海軍兵學校, 海軍經理學校에 入校한 職業軍人이었다. (別表2)

別表 2

旧軍人 3250 名 追放解除

< 陸 軍 >

1. 陸軍士官學校 第 58 期生 (昭和 20 年 8 月任官, 但 幼年學校 出身은 除外) 1,484 名
2. 陸軍經理學校 第 6, 7 期生 (통칭 第 57, 58 期生, 昭和 19 年 5 月 및 20 年 8 月任官) 277 名 計 1,761 名

< 海 軍 >

1. 海軍兵學校 第 74 期生 (昭和 20 年 7 月任官) 1,325 名
 2. 海軍經理學校 (昭和 20 年 7 月任官) 79 名
 3. 特別志願 豫備學校 (商業商船學校 出身者 및 海軍豫備學校 出身者로서 太平洋戰爭後 召集 現役に 轉官한 者) 67 名
計 1,489 名
- 合 計 3,250 名

㉔ 特高關係 336 名 追放解除 (1951.9.8)

㉕ 財閥의 復活 (1951.7.10)

이와같은 占領政策의 變化와 追放解除는 어떤 意味에서는 日本의 實質的인 再軍備를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3) 警察豫備隊의 창設은 바로 日本의 再軍備를 위한 가장 典型的인 사건이었다。 이 警察豫備隊의 창設은 韓國動亂을 위한

極東의 安保와 當時 日本駐屯의 美軍 4個師團의 韓國出兵으로 인
한 日本治安의 對策에서 그 緣유를 찾을 수 있는데 맥元帥의
1950年 年頭辭에서의 (헌법은 自衛權을 否定하지 않는다)는 원칙
은 미국의 公적인 立場의 表明이라고 보겠다。

맥元帥는 同年 7월 8일 「日本경찰力の 增設에 관한 書簡」에서
吉内首相에게 「日本政府에 대하여 75,000名의 國家경찰豫備隊의
창설과 海上保安庁 定員 8,000名의 增強을 위한 必要措置를 許可
한다」라고 함으로써 事實上의 再軍備를 強力하게 指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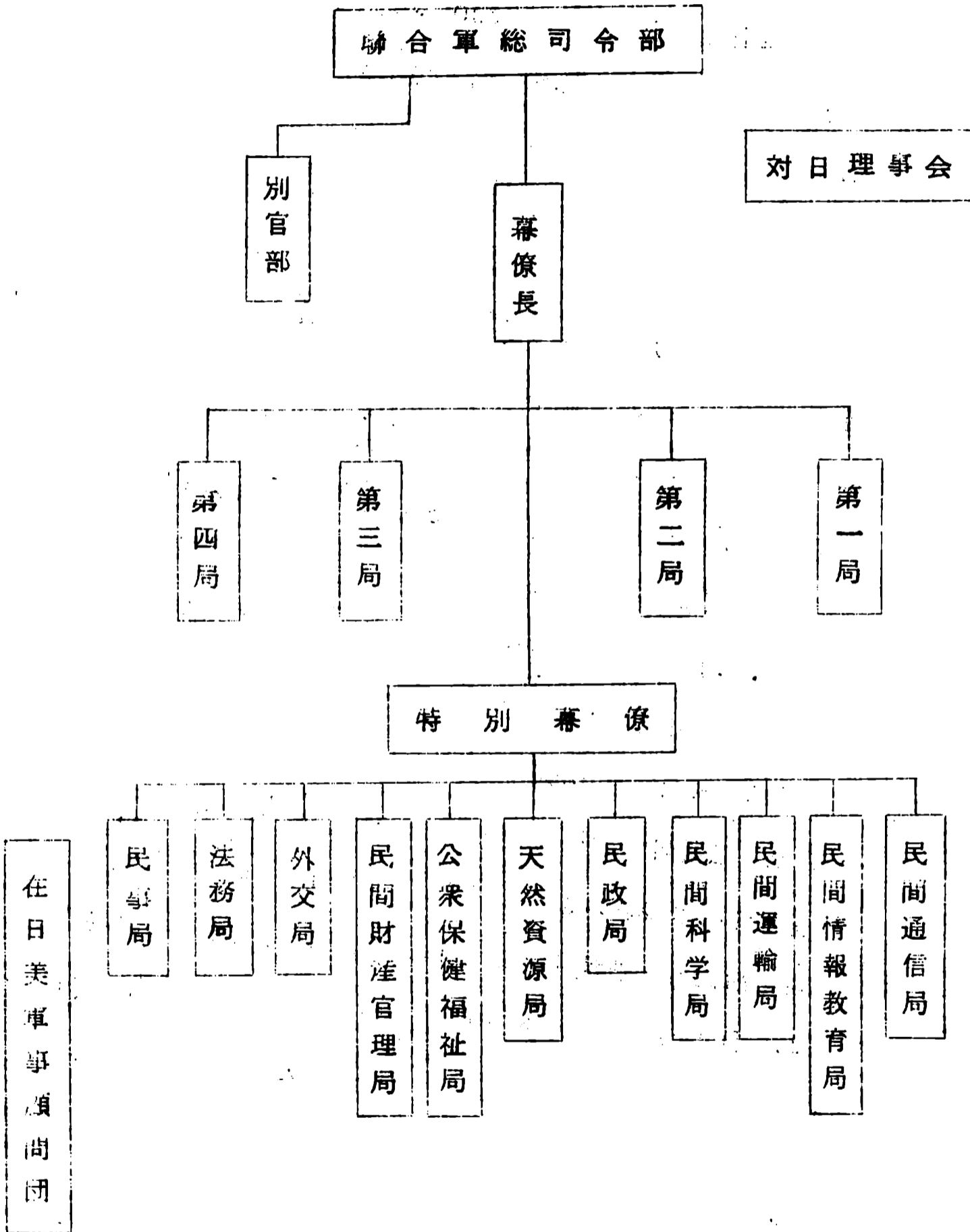
(4) 그후 1950年 7월 14일의 指令에 의해서 경찰豫備隊의 編
制 裝備 訓練 및 統制에 관하여 日本政府를 援助 指導하기 위하
여 軍事고문機關을 民事局의 이름아래 設定하였는데 그 指令에서
第2局(情報局) 第3局(作戰局)의 責任을 전자는 隊員의 募集에
관한 事項과 公共安全部를 통한 指導의 責任을 주고 후자는 部隊
의 最初의 配置 및 그 후의 用共에 관한 指導責任을 부여 하였
다。 在日美軍事 顧問團과 GHQ와의 關係는 「別表3」과 같다。

(5) 警察豫備隊는 그 後 GHQ의 警察豫備隊에 관한 大綱案(1950.7.17)과 1個月後인 8월 10일 日本政府公布의 「警察豫備
隊令」에 의해서 發足하였다。

同令에 의하면 警察豫備隊의 目的은 「日本の 平和와 秩序를 維持
하고 公共의 福祉를 保障하는데 必要한 限度내에서 國家地方警察
및 自治體警察力을 補完키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
의 活動에 관하여서는 「警察의 任務範圍에 限定되는 것이며 적어
도 日本國憲法에 保障하는 個人의 自由 및 權利의 干涉 하는등의

聯合軍總司令部 (GHQ) の 機構

(別表 3)



權能을 亂用해서는 않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같은 規定에서 볼때 警察豫備隊의 性格은 平和와 秩序維持를 위하여 暴力이나 限界를 넘은 政治的 示威에 對備한 治安警察隊같은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警察豫備隊의 構想을 맥元帥는 分明히 擬裝軍隊 4個師團의 編成이었고 또한 그 組織過程 自体가 極秘密裡에 GHQ에서 이루어졌음을 볼때 單純한 治安경찰 아닌 軍隊組織의 基礎組織이라 한 것이다. 이에 관한 詳細한 參考는 『日本再軍備』 F. kowalski 1969 (日沢)에 잘 나타나고 있다.

(6) 特히 注目한 것은 警察豫備隊의 充足과 함께 旧軍人 또는 旧軍閥의 積極的인 움직임이었다. 警察豫備隊가 始作할때 그 募集에 있어서 被追放者나 旧職員軍人は 除外 되어야 한 것인가에 對한 問題가 提起되었다. 經驗이 豊富한 軍人을 豫備隊에 넣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利點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旧軍人 指導者는 聯合國의 國際協定에 의하여 追放되고 있고 聯合國 最高司令官이 公表한 方針에 正面으로 違反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旧軍國主義者 또는 그 支持者는 豫備隊에 旧職等 軍人이나 被追放者를 入隊시키는 것을 贊成하고 있으나 當時의 日本國民 多數는 戰爭을 嫌오하며 再軍備를 反對하고 豫備隊 속에 旧軍人을 넣는 것은 危險하다고 생각 되었다. 또한 日本政府도 비록 모의軍隊라고는 하나 旧軍人의 編入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反証을 보고난뒤 決定키로 하였다.

더욱 注目할 것은 旧軍隊의 編入때문에 當時 總司令部 內에서도

高位軍關係者間에 크게 意見이 對立되어 심각한 긴장을 보였으며 그것은 바로 日本政府側에도 余波가 있었다는 事實이다。

(7) 그렇다면 占領期間동안에 旧軍人 指導者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또 그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 왔던가 太平洋戰爭이 終結하였을때 맥司令部의 第2局은 日本軍事機構의 해체와 復員에 관한 重要な 責任을 갖고 있었다. 第2局長이었던 윌로비少將은 오랫동안 日本軍隊와 싸웠기 때문에 解任된 旧軍人이 갖는 軍事能力을 높히 評價하고 있었다. 그는 이 莫大한 資産을 放置하는 無能한 情報局長은 아니었다. 그는 旧軍人을 監視하는것 같이 하고는 日本 復員局을 組織하였다. 이의 表面的인 目的은 日本軍隊의 해체와 復員이었으며 旧日本陸海軍 將校의 全名簿를 保存하고 極東司令部를 補佐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實際的으로는 日本軍의 復員이 完了되었지만 윌로비少將은 계속 復員局의 活動을 可能케 했으며 따라서 日本軍隊를 再建키 위한 機關같은 느낌이 있었다.

復員局은 戰爭犯罪者가 処刑되고난 뒤 機存한 旧陸海軍의 將官 佐官級의 將校中 가장 有能한 자들을 選択하여 執務케 하였다. 旧軍將校인 이들의 報告는 때로는 美國의 最高位當局까지 올라갔다. 따라서 戰後 軍國主義는 追放되었으나 復員局은 윌로비少將의 密偵으로서 占領軍의 思考에 重大한 影響을 주었다는 것은 극히 注目할 일이다.

더욱 注目한 것은 記錄機關으로서의 復員局은 終戰當時 日本陸海軍에 服務하고 있던 約 70,000名의 正規將校에 대하여 完全한 資料를 갖고 있었다. 復員局의 旧將校는 追放者의 代表者 같았고

이들은 全國의 旧將校와 連絡을 갖고 밑으로는 少尉로부터 大將에 이르기까지 쉽사리 連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復員局員들은 언제나 日本의 非常事態가 일어났을 때에는 美國은 日本의 軍人團體에 援助를 請한 것이라는 期待를 갖고 있었으며 1950년 7월 8일 맥元帥가 吉田首相에게 75,000名의 兵力設置를 要請하는 復員局은 的期倒來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日本人들의 新軍勢力 형성에 있어서의 그들의 暗躍의 根柢가 바로 GHQ內的 復員局이었다는 점은 注意를 갖고 分析한 일이다.

(8) 服部卓四郎大佐와 GHQ에 관해서 分析한다면 服部大佐는 1901년 生으로 太平洋戰鬪時에는 大本營陸軍作戰 課長이었으며 그後 그는 東條首相의 軍事秘書의 한사람이 되었다.

그는 1936年 陸軍內에서도 惡名높은 滿洲関의 1人이었고 滿洲나 北支에 관한 外交政策은 現地人 即 軍閥에 의해서 決定되어야 한다고 하는 主唱者이었다.

1944年 그는 大本營參謀 本부의 實力있는 幕僚將校로 構成되는 特別클럽의 1人이었고 戰爭遂行의 全般的 方針에 대한 調整責任者였다. 따라서 服部大佐는 分明히 大本營에 있어서 主要한 幕僚將校였다.

日本降服後 그와같은 主要職責者가 追放當함은 勿論 더많은 刑罰이 있어야 했는데도 그의 能力때문인지 總司令部에 勤務하게 되고 復員局에 配屬되었다.

勿論 「元來는 公職에서 追放될 經歷者라도 他人에 의해 交替될 수 없는 人材는 總理大臣의 職權에 의하여 公職에 任命될 수 있

있다」는 行政命令 덕분에 GHQ 第2局은 復員局을 設置하고 旧軍將校를 局員으로 採用하여 勤務케 하였다。

특히 注目할 것은 終戰後 5年間 服部大佐는 그 周圍에 優秀한 將校를 多數 모았으며 그 中에는 東条大將의 副官이 적어도 2名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陸軍首 軍事課長이었던 西浦 進大佐이었고 또 한 사람은 參謀本部 作戰課의 井本 愷男大佐였다。 이들의 豫備隊 入隊는 當時 거의 決定的으로 伝해졌는데 그것은 第2局長인 일로 비少將이 全參謀의 反對를 무릅쓰고 積極推進하였으나 結局은 8월 9일 服部大佐 및 旧將校— 그들은 募集센터의 指導官豫定者—에 대하여 豫備隊에 入院資格이 없음을 通告 함으로써 이들 旧軍閥의 新軍隊入隊는 阻止 되었다。

(9) 旧軍人の 採用에 관해서는 기출한바와 같이 日本政府 및 總司令部內에서 다같이 採用하지 않는 方針이었으나 再軍備를 論理的으로 進行키 위해서는 旧軍人을 無視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3월 初級幹部의 確實을 위하여 最初로 追放解除된 陸士 58期 海兵 74期 同該当期生 約 3,000名의 旧正規陸海軍 將校를 對象으로 約 300名을 目標로 特別募集을 했던바

245名이 6월 1일 幹部候補生으로 任命되었다。 이어 1951년 8월 部隊의 上中級 幹部強化의 一環으로서 旧陸海軍佐官級에서 軍事 作戰 統率에 豊富한 知識과 經驗을 갖춘자 中에서 選任者를 선발하여 入隊키로 하고 當時 增原長官은 旧軍 各 關係者와 간담하여 그 協力を 받은 뒤 勸誘狀 發送數 1,700名中 900名応募에 406名이 合格되어 10월 1일에 各 階級에 任命되었다。

그후 9월下旬에 初級幹部採用을 위하여 復員局 都道府県 警備部 또는 同期會를 通하여 該當者에게 呼訴하여 2,000名 志願에 407名이 合格되어 12월 1일에 任命되었다.

이렇게 하여 비록 制限은 되기는 했으나 旧軍人의 新軍勢力에의 潛入은 進行되어 갔으며 그들의 軍内部에서의 發言은 점차로 높아졌으리라 본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旧軍人은 역시 疎外되고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豫備隊에 대하여 敵對視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10) 旧軍人의 動態와 右翼團體에 관해서 살펴보면 전술한 데로 旧軍人의 一部는 豫備隊 時節부터 점차 日本의 새로운 「國軍」에 復役되지 않기 때문에 失望에 가득차고 있다. 그리고 大多數는 右翼團體를 組織하여 入團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動態는 비록 대단한 것은 못된다는 日本治安當局의 見解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앞으로의 新軍勢力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 볼 수 있다. 右翼團體의 總數는 追放 解除 講和究動 直後에는 約 700 程度가 있었기는 하나 現在는 約 500이 있어 그것은 性格에 따라 聯合하는 方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中에는 特히 旧軍人關係에 限定하여 活動적인 右翼團體를 指摘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前述의 「服部一派」가 있는데 每週 旧將校 30 내지 40名이 모여 「作戰會議」라 불리워지는 會議에서 第三次大戰의 東亞의 戰略이 論議되고 있어 그의 過去를 알고있는 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鍋山貞親를 비롯하여 旧南方總軍 參謀副長

일 和知磨二中將이 參加하고 있으며 특히 후자는 韓國將校와도 連絡이 있다는 日本의 輿論이다。

(2) 大阪에서는 野村吉三郎 旧海軍大將이 主管하는 祖國防위同志會가 있는데 이것은 그 傘下에 사쿠라會(桜會)를 各 地方에 組織하여 主로 國家의 綜合戰力으로서의 國防學』을 提唱하고 있다。 拓殖大學에서의 國防學 公開講座는 勿論 夏季大學을 通하여 各 大學에까지 講師派遣 計劃을 갖고 있다。

이와같은 團體가 代表的인 旧軍人右翼 團體인바 이들의 活動計劃은 젊은 世代에 對한 右翼的 組織을 擴大하여 新日本學生同盟 祖國防위 學生隊 學生國防協會 綠 學生聯盟이 各 大學內에서 組織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將來 日本과의 政治向方과 아울러 新軍勢力의 定向에도 많은 影響을 기할 것이란 우려도 결코 없지는 않다。

以上에서 日本의 再軍備過程을 GHQ와 警備隊創設을 中心으로 하여 論하고 특히 警備隊가 新軍隊로서 發足한데 對한 旧軍人の 作用 動態등을 可能的 限 分析考察 하였는데 이들의 新軍勢力에 對한 影響은 크지는 않으나 단속的인 그들의 活動에는 注目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軍勢力의 定立은 系譜的으로 分析하기에는 너무나 時間的으로 빠른 感이 있어 後日에 미루기로 한다。

3. 새로운 軍隊・自衛隊

(1) 自衛隊의 任務

① 自衛隊의 前身인 警察豫備隊가 탄생한 것은 韓國動亂發生後

2個月後인 1950년 8월이었고 2年後인 1952년 8월에는 保安庁
으로 改造되고난 뒤에는 保安隊(陸上) 警備隊(海上)로 되었으며
3年後인 54년 2월에는 防衛庁으로 改造된 뒤 陸·海·空의 3自衛
대가 發足되었다。(具體的인 사항은 생략)

이와 같이 發足된 自衛隊의 任務는 防衛庁設置法(54년 6월9일
公布)에 있어서 「日本の 平和와 獨立을 지키고 國家의 安全을
보장하는것」(同法 4條) 自衛隊法(54년 6월9일 公布)에서
「日本の 平和와 獨立을 지키고 國家의 安全을 保護하기 위하여 直
接 侵略 및 間接侵略에 대하여 日本을 방위하는 것을 主任務로
하고 必要에 따라서 公共의 秩序維持에 任한다」(第3條)라고 明
記되어 있다。 이렇게 불매 自衛隊의 任務는

① 國土의 防衛를 主任務로 하고

② 必要에 따라 治安의 維持에 臨하며

그 前身인 警備隊 保安隊가 治安維持를 主任務로 했을때와는 달
리 防衛라는 軍隊의 性格이 明確化하게 되었다。(別表4 參考)

勿論 別表(三)에서 나타난대로 保安隊·警備隊는 任務에 비추어
불매 治安對策 機關같으나 自衛隊의 경우는 國家의 防衛라는 軍隊
的 性格으로 變化하고 있다。 그리고 吉田首相은 27년 8월4일
保安序幹部들에 대한 「新軍隊의 土台가 되라」는 演說이 더욱 뒷
바침 해주고 있다。

② 自衛隊의 行動

總理大臣의 命令으로 行動하고 있다。 行動의 大體的인 것

은

自衛力の 目的・任務의 변천

(別表 4)

区分	警 察 豫 備 隊	保安隊・警備隊	
目的	<p>日本の 平和와 秩序를 維持하고 公共의 福祉를 保障키 위하여 必要限度内에서 国家地方 警察, 自治体, 警察의 警察力을 補充한다。</p>	<p>日本の 平和와 秩序를 維持하고 人命 및 財産을 保護한다。</p>	<p>日本の 平和와 獨立을 지키고 国家 安全을 保障한다。</p>
任 務	<p>1. 治安維持를 위하여 特別히 必要있을 경우 総理大臣 命令을 받고 행동한다。</p> <p>2. 警察豫備隊의 活動과 경찰의 任務의 범위에 限定될 것이 아니라 憲法의 보장하는 個人의 自由, 權利의 干涉에 까지 權能을 乱用할 수는 없다。</p>	<p>特別한 필요가 있을 경우 행동한다 아울러 警備, 救難의 事業에 종사한다。</p>	<p>直接侵略 및 間接 侵略에 대하여 日本을 防衛하는 것을 主任務로 하고 必要에 따라 公共의 秩序를 維持키 위하여</p>

- 防衛出動(自衛隊法 第76條)
- 治安出動(同 78,81條)
- 各種 行事に의 協力
 - 1) 올림픽에의 協力
 - 2) 国民体育大会의 支援
- 其他 部外協力
 - 1) 海水觀測
 - 2) 人工降雨実験에 對한 協力
 - 3) 音樂隊의 파견
 - 4) 其他

關係文書

- (1) 自衛隊의 治安出動에 對한 訓令(防衛序訓令第25號)
- (2) 國家公安委의 治安維持協定
- (3) 自衛隊 = 警察의 通信協力協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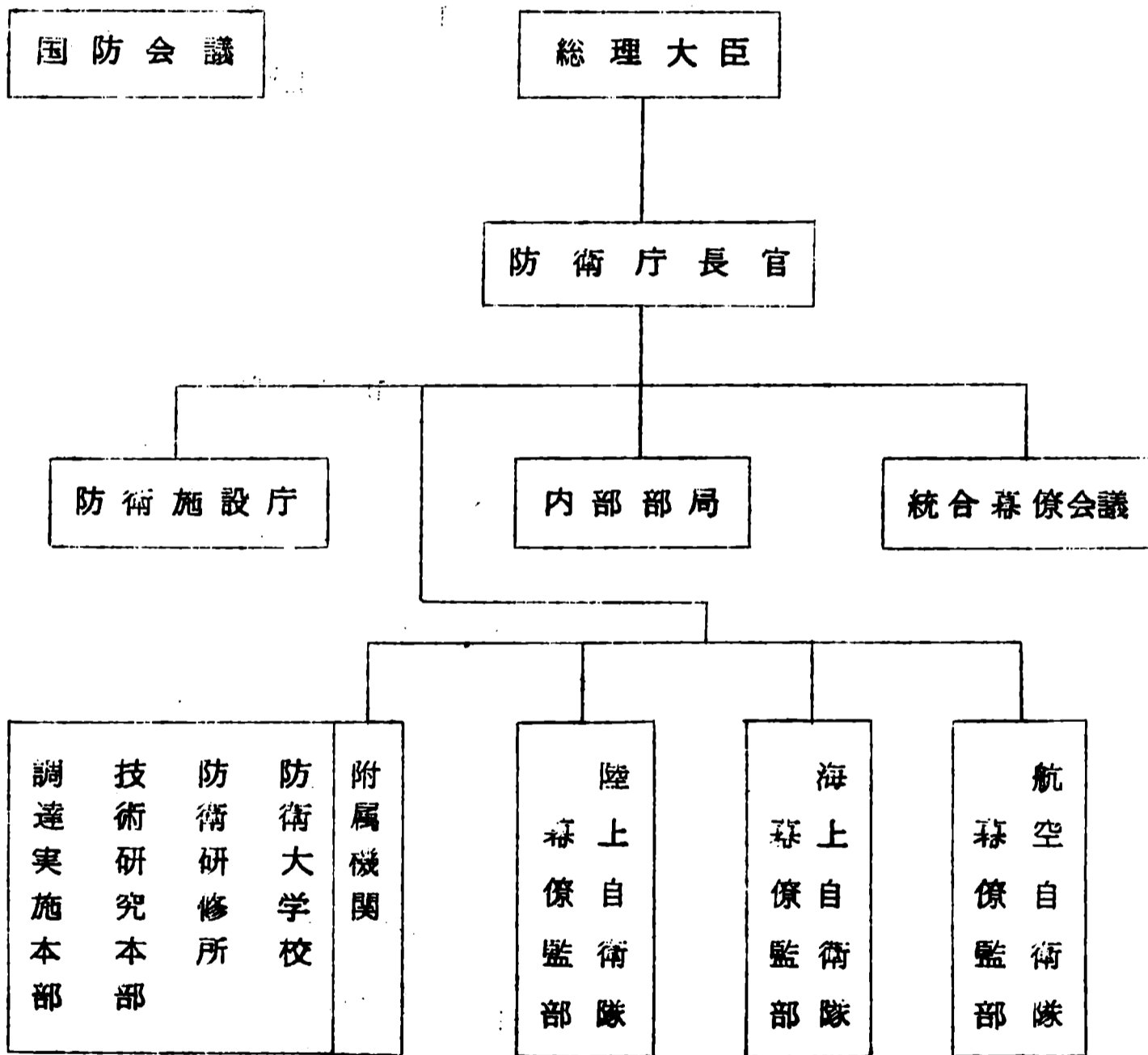
나. 自衛隊의 組織

一般的으로 自衛隊를 行政機關으로 取扱할때 이것을 防衛庁 이라하고 그 實力部隊을 自衛隊라고 부르기 때문에 自衛隊와 防衛 庁은 實地에 있어서는 同一한 것이다。(別表五參考)

自衛隊의 最高指揮監督權은 總理大臣이 갖고 있으며 그 指揮監督 아래 文民의 國務大臣인 防衛庁長官이 自衛隊의 隊務를 統轄하고 있다。

(別表5)

自衛隊の組織



防衛庁에는 内部部局으로서는 長官官房外에 防衛・教育・人事・衛生
經理・裝備의 六局이 있으며 3自衛隊의 總合的 調整을 企劃하고 있
으며 事務의 側面에서 防衛庁長官의 統制力을 確保하고 있다。

또한 防衛庁에는 統合幕僚會議가 있어 專任의 議長(自衛官의 最
上位者)

3自衛隊의 幕僚長으로 構成되고 있다. 同會議는 總合 防衛計劃
이나 3自衛隊의 幕僚幹部가 作成한 防衛計劃의 調整・出動時의 自
衛隊의 指揮命令의 基本政策의 樹立에 있어서 防衛庁長官을 補佐하
고 있다。

3自衛隊에는 幕僚長을 長으로 하여 幕僚幹部가 있고 3自衛隊의
防衛・裝備計劃 등을 立案하고 있다。

附屬機關으로서는 調達實施本部(自衛隊의 裝備를 조달하는 機關)
防衛研修所(自衛隊의 管理運營에 關하여 基本的인 調査研究를 行하
고 幹部 自衛官을 教育하는 機關) 防衛大學校(幹部自衛官의 養成)
가 있다。

外局으로서는 自衛隊・在日美軍이 使用하는 施設의 取得・維持管理
建設에 從事하는 防衛施設庁이 있다。

그리고 防衛에 관한 主要事項에 關하여 內閣總理大臣의 咨文기관
으로서 內閣에 國防會議가 설치되고 있다. 構成은 總理大臣이 議
長이 되고 副總理格인 國務大臣・外務大臣・大藏大臣・防衛庁長官・經
濟企劃庁長官등 5名으로 構成되어 필요시에는 閣僚 國務大臣・總合
幕僚會議議長 및 關係者를 出席 意見 陳述게 할 수 있다。

그리고 國防會議의 任務는

- ① 國防의 基本方針
- ② 國防計劃의 大綱
- ③ 防衛計劃에 關聯하는 産業의 調整
- ④ 防衛計劃에 關聯하는 産業의 調整計劃의 大綱
- ⑤ 防衛出動의 可否
- ⑥ 其他 總理大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에 관한 주요 사항등에 관한 총리대신의 자문에 應하는 것이다。

自衛隊의 정원도 防衛庁 설치법에 정해져 있으며, 정원의 변경은 國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데 정원의 充足率은 海上, 航空에 비해서 陸上自衛隊는 恆時 約 10% 程度가 不足하고 있다。 (例 67年 3월 現在 陸上自衛隊의 充足率은 89.5% 임) 특히 下級兵인 一 等 二等 陸上의 경우 그 率은 더욱 낮아 66.6% 程度이며 當年 勞動力의 不足과 함께 完全充足은 매우 困難할 것 같다。 (別表 6)

(1) 自衛隊의 規模는 兵員의 定員을 分析하면 대략 알 수 있다。 (別表 7)

(別表 6)

自衛隊 充足状況

隊 別	定 員	現 員	充 足 率
陸上自衛隊	173,000 名	156,025 名	90.2 %
海上自衛隊	36,591 "	35,716 "	97.6 %
航空自衛隊	40,703 "	39,619 "	97.3 %
統合幕僚会議	78 "	78 "	100.0 %
合 計	250,372 "	231,438 "	92.4 %

(1967 年現在)

資料 戦後20年史 (1) 와의 統計는 若干
(差異가 있음)

(別表7)

成員의 定員 (防衛施設庁 除外)

(65年3月現在)

部 局	定 員		
	自 衛 官	其 他 職 員	計
内 局		524	524
陸上自衛隊	171,500	130,630	185,130
海上自衛隊	34,963	4,960	39,943
航空自衛隊	39,553	5,356	44,909
統合幕僚會議	78	37	115
防衛研修所		96	96
防衛大學校		735	735
技術研究所		1,030	1,230
調達施本部		642	642
合 計	246,094	72,030	273,124

参考：1968.3.31 現在に

陸上自衛隊 (173,000名)

海上 (36,591名)

航空 (40,703名)으로 変更

統合幕僚會議 (78)

總合計 250,372名

(2) 特히 指摘하고 싶은것은 自衛隊의 幹部를 31,678名 (1966年 10月 現在)이나 이중 旧軍人이 16.6%를 占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二佐이상의 高級地位에는 70%가 旧軍人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3自衛隊 별로 보면 海上이 27.3% 航空이 16.3% 陸上 13.2%이며 防衛大學校 卒業生이 約 5천 5百명 (1969年 現在)이 되고 있다.

(3) 現役自衛官 以外에 54년부터 退職自衛官의 志願에 의해서 豫備自衛官 制度가 設置되어 그 定員은 2,400名이며 緊急 事態 發生時에 自衛隊의 戰力을 確保하기 위해서 있다.

(4) 自衛隊의 戰略 構想 및 防衛

整備計劃은 IV에서 言及

(5) 自衛隊의 協力国体

現在 自衛隊에는 部外的 協力国体로서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① 隊友會 (1959年 結成)

自衛隊의 退職者의 一部가 相互 親睦을 도모하기 위하여 任意團體를 構成 (54年) 했다가 59년에 隊友會로서 統合 現在 全員 약 50,000名이며 同會는 防衛意識의 普及, 自衛隊에 關한 協力, 自衛隊 退職者의 親睦과 相互扶助가 目的

② 自衛隊父兄會 (1959年 結成)

日本 德島市에서 自衛隊를 父兄등이 모여 市父兄會를 組織한 以來 現在 全國的 組織이 되어 그 會員數는 10만을 넘고 있는데 郷土出身 隊員의 慰問, 會員相互間의 親睦活動등이 主目的

이 되고 있다。

③ 自衛隊協力会

이것은 自衛隊 部隊의 所在地를 中心으로 하여 地方業界 商工会의 有力者, 市町村長의 市町村會議員등을 主要組成分子로한 組織이라 주로 部隊의 諸行事に 關한 協力, 自衛官 모집에 대한 協力, 除隊者의 就職알선 같은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데 會員數는 約 30만명 程度이다。

以上에서 自衛隊에 關한 概要를 論述하였거니와 本 研究에 있어서 強調하고 싶은 것은 70年代를 바라보는 日本의 安保를 위한 그들의 戰略構想과 그것을 위한 對備計劃은 年次的으로 規模가 커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相當한 軍事力을 保有하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現在까지만이라도 部内, 外를 論하고 旧軍人世력이 많이 新軍勢力으로 吸收되고 있는바 앞으로 이들의 自衛隊의 性格과 方向을 규정하는데에 役割이 클것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研究가 필요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1. 資料 戦後二十年史(1), 日本評論社 1968
2. 資料 戦後二十年史(3), 日本評論社 1968
3. 戦後 日本小史(上), 矢内原忠雄編, 東京大学出版会, 1960
3. 安全保障体制の 研究(上・下), 安全保障研究会, 時事通信社 1960
5. 2.26事件, 高橋正衛, 中央公論社 1968
6. 昭和の 軍閥, 高橋正衛, 中央公論社 1966
7. 日本の 自衛力, 朝日新聞社刊, 1967
8. 安保問題用語, 資料集, 朝日新聞社刊 1967
9. 日本 再軍備, Frank Kowalski Jr. (日語), サイマル出版会 1969
10. 極東の 安全保障(日本の 安全保障3) 日本の 安全保障編輯委員会刊, 1968
11. 安全保障と 日本関係(日本の 安全保障4), 日本の 安全保障編輯委員会, 1968
12. 世界国防年鑑, 李世弼, 三国文化社, 1968
13. 防衛年鑑 1969, 防衛年鑑刊行会, 1969

4. 새로운 軍勢力の 성격

第二次大戦 이전의 日本軍閥이 종전 후에 一部는 戦犯者로 処断되었다. 그러나 一部 処断되지 않은 軍人들의 동태와 그들이 새로운 軍勢力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1950年 韓国戦争 당시에 美国이 日本에 軍政을 실시하면서 第一次로 日本에 豫備 警察隊를 설치하고 다시 이들 保安隊로 再編成하고 그 다음을 다시 自衛隊로 編成했다. 이와같은 軍編成의 과정에서 첫째로, 旧軍人과 신설된 防衛大学 出身인 새로운 幹部들이 동시에 美国式 軍隊教育을 받는 가운데 그들의 思考方式 즉 旧軍隊와 새로운 幹部들 사이에 意見対立이라는 점은 무엇인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自衛隊가 10여年을 지나는 과정에서 戦力없는 軍隊가 戦力있는 軍으로 轉換함에 따라서 국민 의 輿論 및 政界에서 与野間의 憲法第九條 解釈에 따른 諸問題와 關聯지위 다루어야 될 것이다. 셋째로, 美日安保條約 締結과 世界情勢에 따른 아세아情勢에 對備한 여러가지 問題를 검토하고 그 가운데 戦前軍閥이 戦後20年만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 形態로 남아 있는가 또는 肥大해가는 새로운 日本軍勢力の 展望을 아울러 밝히는데 있다.

日本国民으로서의 再軍備가 必要하다는 層도 있지만 그러나 反對論 측은 再軍備란 것은 戦争과 直接 關係된 것이라고 보며 특히 第二次大戦時의 106,000名이 原爆에서 犠牲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日本国民은 再軍備를 反對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再軍備란 것은 不幸을 自招하는것 以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支配的인 여론 밑에서 1950年 6·25 動亂 직후 日本에 있어서의 美國의 政策이 劃期的인 變化를 가져왔다. 즉 美國은 日本의 軍國主義者를 監視하던 것을 바꾸어 共產主義者에게로 돌리게 되었다. 軍國主義者를 公獄으로부터 追放하는 것을 中止하고 戰前 陸海空軍將校를, 1951년에는 大量追放解除하였다. 1952년에는 약 5,000名程度만 解除치 않고 그 以外에는 모두 解戒하였다. 그러나 旧軍人將校는 大部分이 젊은 때부터 教育이라고는 軍國主義教育 以外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民主的 思考方式을 가질 수 없었다. 지난날 軍部에 抑圧당한 官僚出身者 및 國民들은 旧軍人에게 비난을 하고 美軍政에 協力하여 惡質旧軍人들을 告発하기로 하였다. 戰前 高級將校 大部分은 戰爭犯罪者로서 裁判에 回附되었고, 122,235名이 公獄에서 追放됐다. 結果적으로 旧軍人の 엘리트들은 社會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 1951~1952年 사이 豫備警察隊에 入隊가 許諾되었던 얼마간의 旧軍人들도 全적으로 歡迎된 것은 아니고, 大尉, 少領, 中領, 大領의 차례로 敍選하였다. 그러나 國民들은 그들을 항상 警戒하였다.

豫備警察隊에 入隊하는 것을 反對한 旧軍人將校는 老衰한 편이나 多數는 右翼團體를 만들고 美國에 對한 批判과 젊은 豫備警察隊에 對하여도 좋지않게 여겼다. 그리고 旧軍인들이 中心이 되어 全國에 여러가지 團體를 組織하여 或은 陸士同期生, 海士同期生들이 社交, 情報交換, 共濟, 共助等 目的을 갖고 旧軍人끼리 組織을 形成하

였다. 그러나 그들도 后日에는 "大多数가 日本의 再軍備政策에 同調하여 豫備警察隊에 編入되었다. 戰前의 軍閥이 戰后에도 그 系列을 通한 派閥을 이룬 그대로 繼續되었다. 陸軍과 海軍 戰前의 高級將校와 小壯將校 사이에 國家와 將來問題를 두고 意見의 對立을 노정시키기로 하였다. 旧軍人들은 基本的으로 保守的인 思考方式의 所有者이나, 그들도 戰后 美國과 蘇聯에서 各各 상이한 思想이 들어온 바에 특히 國民에게 直接的인 것 중에서도 危脅을 갖는 것은 共產主義라고 알고 있었다. 그 당시의 世界情勢下에서 美國이 共產主義의 侵略을 저지하는 길은 日本의 再軍備以外는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旧軍人들은 마땅히 呼聲하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으로서 日本을 再武裝시켜 韓國에서 共產主義와 對決시키려 는데 目的이 있었으나, 그와는 다른 생각으로 旧軍人들의 속셈은 外國으로부터 獨立한 日本獨自의 軍人이 되어 임시로 美國의 武器를 갖고 裝備化하면서 한편으로 日本軍需産業을 빨리 이루어야 겠다는 것이었다.

豫備警察隊 創設當時; 1950年 6月 東京都 麻布의 外務省에 戰前 下村定大將, 上月良夫中將, 辰巳栄一中將, 飯村양中將, 宮崎周一少將, 山本茂一郎中將等 旧軍人이 모여 美國이 豫備警察隊를 " 새로운 國軍 " 이라 前提한다면 旧軍人을 豫備警察隊에 參加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 9月에는 豫備警察隊幹部試驗을 거쳐 12月에 大量으로 入隊하게 되었고, 少將까지 公職追放解除를 시킨 다음에 다시 美日講和條約으로 말미암아 全部 解除되었다. 戰前 服部卓四郎大佐와 戰前 辻政信大佐의 兩派가 旧軍人으로서 日本 國

内に 自己들이 組織한 모임을 通하고 또는 政治적인 發言을 하므로서 많은 影響을 기쳤다.

旧軍人들의 思考의 變化와 새로운 幹部들의 西歐式教育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日本의 軍勢力의 性格을 把握해 보는데는 그들의 教育目的의 一面을 보는데 意義가 있을 것으로 안다. 旧軍人は 終戰時 陸士 59期, 海兵 75期 以前 士官出身으로 새로운 軍勢力으로 編成된 대원수와 그 比率을 살펴보면, 總數 約 250,000中, 三尉以上の 幹部自衛官이 32,150名인데 그중 旧軍出身이 4,483名이고, 그리고 將補가 282名 中 旧軍出身 225名으로 約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民主主義教育을 받은 戰后世代와 旧軍人과의 사이에는 意見의 差가 많다고 한다. 防衛大學 榎智雄校長의 教育方針을 一例를 들어보면 『훌륭한 日本人 올바른 社会人이 되라』 그리고 實戰할 수 있는 小隊長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旧軍人들에 대한 批判을 加하면서, 『넓은 視野, 科學的 思考力, 豊富한 人間性』을 基幹으로 삼고 軍事에만 倚매이지 말고 大局적으로 國防을 임두에 두는 同時에 科學技術의 進歩에 낙후되지 말고, 그리하여 우리에게서 人間味에 넘쳐흐르는 人材를 養成하는데 目的이 있다고 強調하고 있다. 위에서 본 防衛大學 幹部養成에 있어 西歐民主主義教育으로부터 차츰 새로운 民主的 軍人어로 發展 確立하게 되었다. 비록 軍國主義 軍隊와는 달리 民主軍隊라고 自負하는 自衛隊이기는 하나 그러나 自衛隊를 둘러싸고 日本政界의 反響은 자못 심각한 바 있다. 自衛隊를 組織한 政治的 根柢는 1952年4月에 發効한 美日과의 平和條約 또는 美日間

의 安保條約에 있다. 이 條約은 日本의 國權回復에 수반한 國土防衛의 基本方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自衛力 增強에 크게 제약이 있다면 하나는 憲法이다. 특히 憲法 第九條 二項은 『陸海空軍 以外の 戰力은 이를 保持하지 않음』이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것은 日本의 必要 最大限度의 限界를 規定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軍事的 實力을 갖는 것을 禁하는 것으로 解析된다. 自衛隊法 第3條에는 『自衛隊의 任務은 日本의 平和와 獨立을 지키고 나라의 安全을 保護하기 위하여 直接 間接 侵略에 對하여 防衛하는 것을 主任務로 하고, 必要에 따라 公共의 秩序維持에 臨한다』라고 되어 있다. 憲法과 自衛隊法 一部를 들 고 日本에서 軍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대한 政界에서의 論難된 몇 가지를 例를 들어 參考 하고자 한다. 1946年 6月29日 日本 衆議院에서 某 野兎議員이 吉田首相에게 日本憲法改定草案 討議에서 『戰爭에는 不當한 戰爭과 正當한 戰爭 두가지가 있는데, 日本軍閥이 한 戰爭은 不當한 戰爭이며 聯合國이 行한 戰爭은 正當한 戰爭으로 본다. 日本의 憲法改定草案에는 戰爭一般에 있어서 侵略戰爭을 拋棄한다고 明記하라』고 主張했다. 이에 대한 吉田의 答辯이 『많은 戰爭은 正當防衛를 名目으로 行해 왔으나 如何한 名目에서도 戰爭을 하지 않는다. 正當防衛戰爭을 認定하는 것도 또한 戰爭을 誘發하는 것이므로 有害無益이다』라고 對答하였다. 몇年뒤에 다시 吉田首相은 『自衛隊를 갖는 것은 國家로서는 當然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國家防衛에는 自衛隊를 가져야 한다는 肯定하는 態度였다. 日本으로서는 지금에 와서는 國內外 情勢와

특히 極東情勢의 여러가지 變化를 考慮해야만 되었고, 또 美國의 對華政策의 變化로 重要な 問題이므로 自衛隊의 性格도 이에 따라 順응하게 되었다. 그러면 70年度의 世界情勢는 全般的으로 平和가 保障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戰爭이 일어날 것이냐가 問題이다. 특히 極東 및 東南亞細亞地域은 東亞兩大陣營의 交叉地域으로서 日本의 立場에서 볼 때, 兩斷된 나라, 領土問題, 宗教問題, 民族問題 등으로 紛爭의 危險을 지니고 있음이 分明하고 또 實際로 部分的으로는 實戰狀態에 놓여 있음으로 深刻하게 問題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항상 戰爭準備에 狂奔하고 있는 북괴와 中共이 積極的인 姿勢를 고수하고 있는 이상 日本으로서는 安逸한 狀態로 있을 수 없는 位置에 처하고 있다. 더욱이나 越南戰의 終結로서 귀추가 주목되게 되었다. 아세아地域에 있어서 戰略面이나 兵力面에서 볼 때, 自由陣營으로서는 美國를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實際로 아세아만을 따로 볼때 中共이 단연 무시할뿐만 아니라 危脅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人力面에서 7億8千의 人口라는 巨大한 수 그리고 아세아에서 唯一한 核保有國이며, 150個 師團을 가진 무시 못할 軍事力을 가진 것이다. 中共이 美國과 蘇聯에 比較하면 “核”으로서는 弱한 使이나 그러나 아세아의 주변 國家에서는 커다란 危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蘇聯에서는 極東에 배치하고 있는 軍事力이 또한 17個 師團이 配置되고 있으며, 東海에서는 日本海上自衛隊의 演習을 항상 監視하고 蘇聯機가 日本領空을 侵犯하면서 航空自衛隊를 긴장시키고 있는 狀態이다. 그리고 日本으로서 볼 때에 韓國에서 북괴의 무장간첩

의 南派, 美國의 푸에부로트의 남치 등의 긴장 상태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음이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위 狀態下에서는 日本自
 體로서 防衛問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日本의 주위나라는
 日本을 侵略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차치하고,
 日本보다 強大한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日本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自主防衛力을 保有하여야 하는 重
 大問題에 直面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日本이 戰后 20年이
 지난 오늘날 多方面으로 發展하여, 国内的인 産業發展으로 보나 國
 際的인 地位向上으로 보나 軍事面에서의 均衡된 發展도 기해야 되
 겠다는 理論도 나올 수 있다. 敗戰日本으로서는 國防의 基本方針
 에 있어서 國防의 目的은 國家와 國民의 生存權을 지키는 것이
 첫째이고 外國의 強制的인 危脅으로부터 干涉을 배제하여 獨立을
 지키는것이 그 둘째이며 따라서 重要性和 妥當性이 있게 된다.
 그러나 日本 防衛力의 必要性은 憲法에 基礎를 두고는 있으나 國
 家間의 利害關係와 반드시 一致되지 않을때, 즉 外交的 限界에서
 벗어나는 最惡의 경우에는 軍事的 對策도 必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日本의 現政權을 担当하고 있는
 佐藤內閣이 美國의 對亞政策에 協力하는 方向으로 推進하여 再武裝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는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듯이 보인다.

이상 日軍의 新旧世代間의 差異點, 日軍創設 및 再武裝에 대한
 日本人 自身の 批判, 그리고 世界情勢속에서의 日軍의 潛在的機能
 特히 亞細亞의 極銳한 趨緊張속에서의 日軍의 의도를 대충 살펴보
 았다.

非人道的 行為로 낙인적인 日帝旧軍이 아세아의 새 情勢의 불결
에 힘입어 再軍備를 한다는 事實은, 한편으로는 달갑지 않은 일이
기는 하나 그들 自身の 民主的 변모와 自由主義에의 寄与는 북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70年을 내다보면서 日軍의
性裕를 진단한다면, 過去 20年間 日軍이 끼친 影響은 차츰 새로운
世代의 民主的 軍人(防衛大學 出身 現在幹部將校를 少領으로 보고)
의 時代로 移行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亞細亞地域에 있어서 自
由陣營의 뚜렷한 우방으로서 日軍의 役割은 注目된다. 第二次大戰
의 戰犯的 記憶을 비추어 보아 日軍의 民主化 내지는 自由思想
武装化는 아세아人的 重要한 關心事이고 나아가서는 自由陣營國家
모두의 關心事가 될것이다.

Ⅲ 戰后日本の財閥

1.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

G H Q 칼텔과장은 일본재벌과 외국재벌의 상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일본재벌의 구성 요소는 거만의 부를 가지고 그 사용인과 봉건적 관계에 있으며 또 그 세력이 일본전체의 재정경제에 미치고 있다는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재벌은 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상사한 것으로 로스차일드 재벌과 비유하였다. 이러한 일본재벌을 전후 연합국측에서는 해체하였는데 그 해체에 관한 기본태도는 45년 9월 22일의 미국의 대일본관리정책 가운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상·공업의 대부분에 지배력을 가진 재벌콘체른 및 금융콘체른을 해체하기 위한 정책은 조장되어야 한다고. 또 10월 15일 G.H.Q. 경제과학국장의 성명에 의하면 재벌해체의 목적과 해체에 대처하는 근본원칙을 두가지로 설정하고 제1은 이들 재벌은 전쟁중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는데 이와 같은 전사이득을 배출케 하여 모든 일본인에게 전쟁은 결코 유리한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토록 하는 것이고 제2로는 전체주의적 독점력을 가진 경제세력을 파괴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적 재건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면서 해체방침으로서의 처음부터 강압수단을 구사하지는 않았고 일본측의 자발적인 개혁기운이 움터오기를 기대하여 다만 이것을 조정하는데에 그치기도 하였다.

재벌해체의 실제조치로는 10월 20일 G.H.Q.는 三井·三菱등

15 재벌에게 그 사업내용, 자본구성 등의 보고를 제출토록 하고 10월 31일에는 처리방침 결정까지 자본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5 재벌에 대해서 자산동결지시령을 내렸다.

당시 G.H.Q. 칼텔과장은 자산동결지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즉 재벌해체 및 대회사자산동결지시의 목적은 재벌의 봉건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과 국민소득의 분배를 일반국민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 독점적 대회사의 해산, 호감이 가지 않는 회사 가령 王子製紙 처럼 타사업회사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 이들 회사 상호간의 관계를 절단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G.H.Q.의 의도를 참작하여 三井·三菱·住友 각 본사, 安田保善社에 관한 지주정리위원회안에 의한 해체안 즉 지주회사정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4대지주회사는 그 소유증권의 전부를 위원회에 양도하고 재벌의 역원은 사직하며 양도된 증권이 최종적으로 처분되면 원소유자는 상환기 10년이상 처분 및 양도금지의 국채를 수령한다는 안을 G.H.Q.에 제출한바 45년 11월 6일부의 G.H.Q. 지령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승인하였고 일본정부는 즉시 그 실행에 착수하라 명령하였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안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즉 ㉠ 4대재벌본사 및 4대재벌가족관계의 일체의 재산처분 이전금지 ㉡ 4대재벌이외의 공업·상업·금융 및 농업의 기업결합체의 해체 ㉢ 사적독점 및 거래제한등을 배제·저지하고 공업·상업·금융·농업등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주는 법률의 제정이었는데 이들 지시가 뜻하는 바는 재벌의 지배관계가 첫째로

는 지주회사들 통한 주식의 소유에 있고 둘째로는 인적결합에 있으며 셋째로는 금융기관과의 관련이므로 이를 결단하는 동시에 4대 재벌뿐만 아니라 타재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적결합까지도 해체하는 동시에 금후 그러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따라서 4대 재벌의 해체는 단지 그를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양해된 것이었다.

일본경제에 있어서 독점적 지배력을 배제하고 자유경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재벌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기성재벌인가 신흥재벌이냐를 가리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문제는 더욱 넓은 전지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기술한 10월 31일의 지령에 의한 제한회사령을 45년 11월 4일 공포하고 재벌 기타 주요회사의 해산을 제한하며 재벌 및 자회사가 소유하는 각종 재산처분을 제한하게 하였다.

12월 11일부의 G.H.Q. 지시는 전기 15재벌에다 3사를 더하여 이들 18사에 관계있는 336사를 제한회사로 했다.

제한회사는 그후 누차 추가되었다. 그리고 또 46년 6월 4일에는 G.H.Q. 지시로 개인금융활동제한령이 공포되어 먼저 말한 4대 재벌이외의 鮎川이하 10재벌가족에 대해서 그들이 소유하는 동산·부동산의 매각·증여·양도·이전을 금지시켰다.

이리하여 일본정부는 재벌해체를 담당추진기관으로서 지주정리위원회령을 46년 4월 22일 공포시행했고 그 발족은 8월 8일에야 보고 동월 27일에 농위원회는 비로소 제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 5

내재벌 (三井・三菱・住友各본사・安田 保壽社・住友 士産業) 을 지주회사로서 제 1차 지정함과 동시에 지주양도에 관한 근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즉 (1)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을 먼저하고 부동산 기타의 재산은 후로 한다.

(2) 유가증권은 전부 양도받는다.

(3) 양도받은 유가증권은 실제로 위원회의 점유로 한다.

제 1차 지정이후는 순전하게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지정을 하게 되어 동 위원회는 46년 11월 21일 川崎重工業이하 40사를 지주회사로서 제 2차 지정하였고 나아가서 12월 3일에는 재벌자회사 가운데 대회사 三井鉱山이하 30사를 지주회사로서 제 3차 지정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그 하부의 제한회사에 대해서도 의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 정리·운영상에 넓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지주회사의 해체가 진척됨에 따라서 제한회사가 자회사나 손회사를 통하여 경제계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46년 11월 25일 제한회사의 지배금지법에 관한 법령을 공포 실시하여 재벌해체의 강화를 기했다.

즉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한회사, 그 자회사, 손회사와 타회사와의 사이에 자본관계·인적지배 및 사업관계를 절단했던 것이다.

47년 3월 15일에는 제 4차 지정으로서 國際電氣通信 등 2사를 추가하여 재계의 해체는 착착 진척했으나 { 제 5차 지정 (47년 9월 26일) 大原台資会社이하 16사 } 이 정신은 당연히 신흥자본의 독점적 지배배제까지 미쳐야 했다.

즉 당시까지 방치되어 왔던 사적독점 혹은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급속히 배제하여 일응 민주적인 수준화를 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재벌해체는 이를 위한 유력한 조치이기는하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왜냐하면 해체된 재벌회사라 할지라도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해서 신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배제를 취택해야 할 것이고 또 재벌해체만으로는 신종자본층이 누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외에 장차 재기될 사적독점의 발생을 금지하는 항구적인 조치, 이를테면 독점금지법과 같은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러한 조치는 모두 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조직, 기구면의 민주화는 촉진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들 조직기구안에서 이것을 운영한 많은 유력경제인도 인퇴했으므로 재계의 인적기구는 일신하게 되었다. 즉 재벌가족 56명은 지정과 동시에 관계회사의 중역을 모두 사임하고 더하여 재벌직원 2210명도 632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들 다수의 유력경제인의 인퇴는 재벌해체에 의했다기 보다 오히려 재계의 추방령에 의해서 중요회사의 수뇌가 일제히 추방되었는 예가 많았다.

이것은 46년 1월 4일부의 매로란담을 발단으로 하는 재계추방이 약 2500의 주요회사의 주요봉직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2 재벌해체의 종결

47년 12월 24일 미국무차관은 일본재벌해체에 관한 재검토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바 있다.

「미국은 일본재벌회사의 경영 및 소유방식에 관한 여태까지의 태도를 수정하기 위하여 복하 재벌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전쟁중과 같은 형태의 일본인에 의한 재벌지배는 이미 폐지되어 이러한 점에 관한 미국의 목적은 바야흐로 완성되었다」

추세가 이러함에 드디어 일본대장성은 51년 6월말 G.H.Q로부터 제한회사령 및 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에 관한 지령을 폐지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음으로써 여기에 의거하여 7월 1일부로 제한회사령 및 지주회사정리위원회, 유가증권처리조정협의회를 폐지하였으므로 경제민주화법규는 독점금지법, 사업자단체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소멸했다. 6월말로서 해체된 제한회사는 국내 회사로서는 三井 본사 이하 7사였고 해외회사로서는 三井隆金屬 이하 62사였다.

3대재벌의 상호·표장사용금지조치는 5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있었으나 강화조약 발표에 의해서 재벌관계 제지령과 더불어 4월 28일 실효하였고 여기에 따른 조치로서 三井·三菱·住友의 상호, 표장은 지난날 그 상표권자였는자,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제 2 회사 등이 새로이 출두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등록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52년 5월말 日東倉庫건물이 三井物産의 상호를 光和実業이 三菱商社の 상호를 계승하게 되어 이들 중심으로 구출산, 상사 각사의 합병에의 움직임이 활발화했다.

그러나 재벌해체의 실정은 트루먼교서, 마-샬프랜의 실시능률 계기로 한 미쓰간의 대립과 내외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혁은 출발부터 극히 불철저했다.

즉 최초의 지정 그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었으나 그후 이들 지정마저도 점차 해제되었고 나아가서 49년 7월의 제 16차 취소로 지정해제는 297사에 이르러 나머지 지정회사는 불과 28사밖에 되지 않았다. 또 48년 8월에는 이들 법령은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결정되었다. 나아가서 독점금지법에 관해서도 개정의 요구와 실제상의 필요가 생겼는데 그것은 주로 전후경제의 재건과정에 있어서 외자도입이 불가결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들 법률이 이것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49년 6월 독점금지법은 현실정세에 응해서 개정되고 특수금지 내지 제한에 관해서 대폭의 완화와 외자도입을 저해하는 규정의 삭제가 행해졌다.

이상과 같은 재벌의 해체 및 사적독점금지의 조치는 종래의 일본경제기구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에는 이 조치를 실행해야 하는 정부측의 지연적·소극적 태도와 제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법규의 대폭적 수정이 행해졌고 재벌형태의 완전한 불식은 실현할 수가 없었다. 뿐만아니라 전후경제의 부흥과정에 있어서는 이들 조치의 틈을 타서 새로운 독점자본 형태가 나타나서 오히려 그 지배력은 점차 강파발전해 갔다.

3. 경제자립화 과정과 재벌

가) 기술혁신

재벌해체를 거친 일본자본을 다시 숨쉬게 한 계기는 우리나라의 6.25동란이었다. 일본은 전쟁을 <천우>로 전화하는 전통적 습성을 부활하여 特需라는 이름의 노다지로 경제붐을 현출시켰다. 동란의 4년간 일본의 달러회독고는 넓은 의미의 特需를 합계한다면 23억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特需는 당연하게도 대기업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붐의 혜택을 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50년 가을경부터 열광적인 설비투자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런 경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기술의 도입경쟁으로 화했다.

이후 수년간은 이러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전수준을 돌파하여 <이미 전후는 아니다.>라는 시기를 맞이했는 것이다. 이리하여 56년의 소위 <神武景氣>를 선계로 하여 기술혁신도 더욱 더 본격적인 전개를 보여 무역구조의 변화마저 수반하면서 전개해갔다. 경제자립화가 스로간이 되었고 생산성향상운동의 도입노 이때의 일이다.

오토메이션이 보급되고 화학공업은 석유화학공업으로서 재편성되어 이른바 산업구조 고도화의 단계에 접어는 것이다. 나아가서 59년 말경부터 무역의 자유화가 시작되자 금번에는 국제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해서 수요에 선행한 근대화투자가 활발해졌다.

한편 이러한 급템포의 기술혁신에는 모순과 애초가 없지도 않았다 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생산재시장의 확대는 촉진되었

으나 기술혁신의 자금원은 특수분야에서 시작되고 정부자금의 투입에 의존되는바 컸다. 또 대기업의 과점이라 부르는 상황에서 설비투자경쟁은 이러한 속도를 재촉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 기간 국내의 자립적인 신기술의 개척은 뒤지고 말았다. 흔히 일본의 대기업을 두고 마치 하루살이와 같아서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과다이익을 올린다는 말을 한다. 사실 일본의 기술도입은 50년의 외자법실시 이래 61년까지 그 주류를 이루는 각종기술도입만으로 1670건이나 되었고 금액으로는 404,057천달러나 된다. 산업별로는 기계를 필두로 하여 전기기계·화학·금속·수송용기계의 순으로 기술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계공업이 총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여 이 분야가 가장 뒤져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의존은 일본전체 경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구나 그 마이너스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각 기업이 앞을 다투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복투자라는 낭비와 외화지출상의 불이익을 가져왔다. 그리고 도입자체도 거의 미국 일변도였고 또 이즈음의 경향이 선진국측에서 단지 기술의 공여라든가 기술료의 취득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의 적극적인 자본참가를 조건으로 삼는 경향이므로 자립화에의 관점에서는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 이러한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이상이라고 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지주는 기술혁신이었다.

그러므로하여 기술혁신에서 탈락한 산업은 사양화하고 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은 타 산업부문간 뿐만 아니라 동일산업부문에서도 일어났다.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석탄산업의 쇠퇴라든가 섬유산업에

서 면적에서 합성섬유로 주역이 교체된 것도 이것을 말한다. 나아가서 기술혁신은 산업부문간의 불균등성이 확대된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소위 2중구조에 상징되는 독점적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 에 그 격차를 더욱 더 확장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

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후 재생산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경제는 거의 무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했다. 왜냐하면 전시중의 대표적 대기업=재벌의 폭력에 의한 직접소모외에도 재벌해체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이 다시금 소생케 한 계기는 6.25동란이었다. 일본은 이 사변에 의해서 특수품을 일으키는데 붐은 먼저 자동차등의 특수발수와 선박수출로 시작하여 철강·기계·화학비료 등에 미쳤다. 섬유등 경공업분야의 회복은 이들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서 부문간의 불균등발전이 이 시기부터 명백해 짐으로써 산업구조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55년경에 이르는 그 후의 수년간은 정부의 합리화정책과 외국기술의 급속한 도입에 의한 근대화투자로 중화학공업의 자립에로 향한 노력의 시기였다. 55년경을 경계로 하여 일본경제는 전체로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이해 말에 일본정부는 경제자립 5개년계획을 작성했다. 중화학공업화가 비로소 처음으로 명백하게 경제정책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산업발전의 활도가 수출발전에 있고 수출의 중심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도화정책의 요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고도화정책은 신장기 경제계획(57년 12월)으로 인계되었고 중화학공업가운데 특히 기계공업의 조장·발전을 중시하게 되었다.

60년 말에는 소득배분계획이 상정되고 여기에서도 고도화는 경제정책의 중심과제의 하나로 간주되는 동시에 기계공업의 발전을 지향하였다. 그러자 이의 효과는 먼저 산업구성상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와서 농업인구의 감소(제1차산업은 55년에는 41%, 60년에는 32.9%)와 제조공업내부에서도 중화학공업이 바야흐로 선진국수준까지 그 비중(약 50%)이 높아져 갔다.

다) 자본구조

전전의 일본산업구조는 순수농업의 비정상적인 발전을 제외하면 섬유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부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모습은 전전의 투자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三井·三越 등의 재벌은 상사부문에서 비중이 높은 이들에만 기생성이 강한 콘체른이었으나 그 내부에서도 역시 경공업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상대로서는 다분히 전후의 산업구조의 재편성에는 대응하지 못했겠으나 이것을 결과적으로 도우게 된 것이 재벌해체였다. 이런 대수술을 통하여 재벌은 각기 이미 말한바와 같이 전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탈피할 한셈이다. 그래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투자구조를 중화학공업화시키고 나아가서 자본을 대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란트(공장시설, 기계의 총체)는 거대하게 되고 단위당 투자액도 대규모로 되었다. 설비투자는 이리하여 전체로서 대형화되었다. 그래서 52~

55년 평균으로 기계공업부문 설비투자의 비중은 불과 8.1%였던 것이 62년초의 예상에는 20.4%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부문의 설비투자로서 그 과급효과도 큰 것에 미루어서 관련기계부문이라든가 철강을 자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투자에 견디어 나가는 기업은 당연히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는 것이라야 했다. 뿐만아니라 거액의 자본력은 거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자기축적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국가자금이라든가 금융기관의 의존도를 높이게 하고 혹은 거대기업간의 제휴, 합농등으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격렬한 자본지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구조고도화가 자본지도에 여하히 영향주었는가를 이하 4가지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1로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화의 확립.

전전부터 일본의 콘체른내부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한 역할은 컸으나 전후는 이것이 형태를 바꾸어 그 지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재벌해체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거의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나아가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투자규모대형화에 따른 타인자본의존도의 증대에 있다. 은행용자의 전후특징은 소위 협조용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특정은행을 간사은행으로 하는 복수의 은행의 협조로서 용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기업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가 갈수록 거대화하는 자금수요에 대해서 특정금융기관의 용자만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다수은행과 거래관계들 가져야하고 타방
 금융기관측으로는 단독으로 대형화하고 장기화한 자금 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일본최대의 거대회사라
 할 수 있는 日立製作所の 경우 산업성립은 구日産계라 할 수 있
 는데 용자관계에서 보면 三和를 중심으로 第一・富士・興銀 등 수
 십은행의 협조용자로서 이복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금융기관에의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 면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기업체열이 확립되
 어 그것이 주로 구재벌의 부활제편성체도에 실려하고 있고 둘째,
 그러면서 그것과는 정반대로 협조용자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배타
 적 결합의 부정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두 측면은
 자본집중의 관점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모티-브가 되어 있다.

제 2로는 하청기업의 계열화

기술혁신의 급진전에 수반하여 거대기업 그 자신의 체질개선은 진척
 되었으나 그 하청부문인 중소기업은 여전히 낡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대기업자체의 전
 진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거대기업측에서는 하청기업들 포함한 체계
 적인 근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 과점이라는 독
 점지배의 상황하에서 시장지배의 경쟁이 특히 격심하였고 그때문에
 독점기업은 최종시장에 이르기까지의 가공부문이라든가 유통부문을
 포함한 통일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해야 했다. 이러한 예는 철강업
 에 있어서의 본 회사로서 八幡製鉄이 마련한 合同團이라든가, 가
 공부문과 유통부문을 포함한 통일지배의 전형, 합성섬유 관계에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열화하는 형식의 자본집중의 진행은 6.25사변 붐경부터 시작하여 55년이후 현저하게 나타나서 중화학공업부분을 중심으로 계열화가 완성되어 갔다.

제 3으로는 국제계열화의 발전

내

(4)

계열화는 국제적 규모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외자법시행(49년) 이래 61년까지 1670건, 이것을 자본환원하면 80억불에 달하고 국별로는 미국·독일·스위스·영국·불란서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고 총건수의 63%를 점하고 있다.

과점경주상황하에서의 기술혁신에 촉발된 도입임으로 역시 기계나 화학부분이 많다. 기계가 건수로 54%, 화학 21%를 점하고 있다. 기업별로서는 三菱重工業·東芝·石川島播磨重工業·日立製作所 三菱造船 등의 중기계 메이커가 건수로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무렵 특히 눈에 띄는 경향은 단순한 기술공여와 기술료지불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이 경영에 참가하기 시작한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먼저 石油精製会社에서 시작했다. 하기야 共同出資会社 자체의 생산액이나 또 주식총수에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 대소로운 것은 아니나 단지 이러한 국제계열화의 진행은 국내의 자본집중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라 내다 볼 수 있다.

제 4로는 새로운 기업집단의 편성

전후의 기술혁신은 먼저말한 계열화의 진행과 아울러 대기업그룹의 새로운 편성을 자극하고 있다. 계열화할 이클테면 종의 관계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거대기업상호간의 횡적관계강화를 말한다.

구 재벌은 역시 불사조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부활이라 하기에는 다소 그 모습이 이상적이다.

우선 첫째로 기술혁신의 중추에 있는 신산업에 그 부활이 명백히 나타나있다.

이 점을 가장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산업이다. 여기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새로운 자본집결이 강고하게 형성되어 버렸다. 東芝를 중심으로 하는 三井계의 日本原子力産業(30 수사) 三菱계의 三菱原子力工業(20 수사), 住友계의 住友原子力工業(10 수사), 이들 재벌계기업의 공동출자에 의한 3 회사, 日立을 중심으로 하는 日産계의 東京原子力産業會社(10 수사), 第一銀行을 중심으로 古河, 川崎계의 第一原子力會社 이들 5 대 그룹이다. 이것은 재벌계 여러 회사의 새로운 집결을 표시하는 동시에 은행과 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단인 것이다.

확실히 재벌은 부활했다. 그러나 단 더 일층의 근대적 금융자본으로서이다. 三井계의 필요회 · 5 일 회, 三菱계의 금요회, 住友계의 백수회 · 상노회 등 사장회나 대표기업 최고수석의 회합도 가지나 이것도 전전의 가족적인 지도부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가족적 콘채본의 성격은 재벌해체를 해소했다. 주도권은 전전의 상사부문에서 금융기관에 이행하고 내부실력자 순위도 크게 변화하였다. 가령 三井계에서는 사양화한 三井鉦山을 대신하여 기술혁신중축산업인 東芝나 東洋레이온이 크게 상승하였다.

더구나 東芝등은 그 자체가 거대한 계열을 가진 일대 트리스트

를 형성하고 있다. 東芝처럼 콘체른의 틀에 박히지 않는 거대 기업이 옛적 재벌과는 인연이 얽은 곳에 잠입해 있다는 것도 전후의 특징이기도 하다. 日立·八幡·富士·日本鋼管·松下·三菱電機·日本石油·東洋레이온·豐田自動車·新三菱重工業 등 세계순위에 있는 대 기업은 총체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먼저 말한 협조응자의 문제도 이들 거대기업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국가자금이나 외자와의 관계도 밀접하고 八幡이나 富士製鉄 또 9개 전력회사는 원래 국영의 대기업이었다.

둘째, 여기에 더하여 기업집단의 성격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은 共同出資會社의 증가이다. 공동출자회사 설립논기의 하나는 격렬한 Share 확대경주이었고 최대동기는 기술면을 통한 결합을 위해서였다. 그 위에 그 설립에는 거액의 자금과 확실한 판매망이 확보되어야 했다. 三井石油化学·三菱油化·昭和油化등의 신흥석유화학회사는 모두 몇몇 회사의 공동출자방식에 의해서 탄생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명백히 다음 시기에 오는 기업합동에의 일보전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전진된 기업집단 그것이야말로 콤비나-드라고 호칭되는 것이다.

자본그룹과 산업 부문 및 회사명 (표 1)

자 본 그 룹 과 산 업 부 문

	三 井 三 井 三 井		東 芝 三 井
金 融	三井銀行・三井信託 大正海上	三井生命 (野村証券)	
鉱 業	三井鉱山 北海道炭硯汽船 太平洋炭硯	松島炭硯 帝國硫黃 北海道硫黃	
金 属	三井金属鉱業 日本製鋼所 藤倉電線		昭和電線電纜 東芝鋼管 東芝電線
機 械	三井造船・藤永田造 船・昭和飛行機・湯 淺電池・三井三池製 作所	(鐘淵機械)	東芝・東芝機械 電業社・芝浦製 作所・芝浦共同 工業
化 学	東洋高圧・三井化学 工業・三井石油化学 東亞合成	大日本세루로이드 電氣化学・東洋 曹達・富士写真 필름(鐘淵化学)	
織 維	東洋레이온 (鐘淵紡績)		
其 他 工 業	三松工業・三井建設 日本製粉・台糖・王 子製紙	十條製紙・本州 製紙・小野田세 멘트・제네랄物 産・日本原子力事業	
商 業 不 動 産	三井物産・東洋棉花 東京食品	三井不動産	東芝商社
運 輸 倉 庫	三井船舶・明治海運 三井倉庫・三井埠頭		
其 他	三井農林・關東天然瓦斯		

명 회사 명 (表 1)

豐田 그룹	三 菱 組 團	
	三菱銀行・三菱信託・東京海上	明治生命 (日興証券)
	三菱鉱業・雄別炭鉱 昭和鉱業	
愛知製鋼	三菱金属鉱業・三菱鋼材・三菱製鋼・日本알미늄	
도요타自動車 豐田自動織機 豐田工機 日本電装	三菱造船・新三菱重工・三菱日本電工・三菱電機・三菱化工液	日本電池 島津製作所 日本光学工業
	三菱化成・江戸川化学・日本카바이트・三菱油化・三菱몬산토化成	大日本塗料 라이온油脂
民成紡績	三菱레이온 (富士紡績)	
	日東製粉・三菱石油・旭硝子 三菱세멘트・日本陶器	三菱製紙 기린비루 三菱電子力工業
도요타自動車販 売・豐田通商	三菱商社・金商又一・ 三菱地所	
	三菱海運・日本郵船・東邦海運 東京船舶	三菱倉庫

其二

	住友グループ		古河グループ	川崎グループ
	金融	住友銀行 住友信託 住友海上	住友生命 (大和証券)	
鉱業	住友石炭鉱業		古河鉱業	
金属	住友金属鉱山 住友電工 住友金属工業 日本パイプ	日本ステンレス 大阪チダニウム (久保田電工)	古河電工 日本軽金属 日本アルミニウム	川崎製鉄
機械	住友機械 大阪金属工業 日本電気 日新電機 日本電気精器	北辰電機 뿌린스自動車	富士電機 富士通信機 古河電池	川崎重工業 川崎航空機 川崎車輛
化学	住友化学 住友베크라이트 別府化学 神東塗料		旭電化 日本제온 東亜페인트 古河化学 古河마그네슘	川鉄化学
織維			横浜護謨	
其他工業	別子建設 日本硝子 住友原子力工業			
商業不動産	住友商社 (伊藤忠商事) 大阪建設			川鉄商社 川崎不動産
運輸倉庫	大阪商船 中央汽船 関西汽船 住友金庫			川崎汽船
其他	住友林業 住友共同電力			

第一銀行工種

旧鈴木商店工種	藤山工種	明治工種	其他
	第一信託	朝日生命	
	日東金屬 山・松尾鉦業		
神戸製鋼 尼崎製鉄 日本高周波鋼 日本発条			日本特殊網 志村化工 大日電線 第一電工
神鋼電機 吳造船所 日本에아부레기	日本코론 비아	明治機械	日本피스톤링子・日本無線 線・石川島幡鑿重工・浦 賀浴渠・이수子自動車・ 汽車製造・服部時計店
	日東化学工 業		
			大阪毛織 東京帽子
	大日本製糖 日東製紙	明治製糖・日本甜 菜製糖・明治製菓 明治乳業・昭和製糖	清永建設 芝浦製糖
日商		明治商社	
			渋沢倉庫

其三

	富士 銀		
	旧安田系	浅野 그룹	森 그룹
金融	富士銀行	安田信託	安田
鉦業			
金屬		日本鋼管	日本金屬 昭和아루미
機械	帝国 피스톤링구 日本精工	沖電氣	
化學	日本酸素	日本카-릿토 鋼管化學	昭和電工 昭和油化
纖維	帝国纖維・中央織 維・東洋레이온 昭榮興絲		
其他工業	日本紙業 東邦세로판	日本세멘트・第一세 멘트・日本히-무관 日本에다넛도파이프 浅野스레트	東京原子
商業不動産	東京建物	朝日物産 浅野物産	昭榮興業
運輸倉庫		東洋汽船 日之出汽船	
其他			姫川冠力

行 工 号		三 和 銀 行 工 号	
日産・日立 工号	其 他		
火災 日産火災・日産生命	安田生命	三和銀行 大同生命	
日本炭礦		宇部興産	
日立金屬 日立電線 日本鋳業	京都製鋼 淀川製鋼 栗本鉄工所	日新製鋼 中山製鋼所	
日立製作所・日 立精機・日立工 機・日立造浴・ 日産自動車	函館電子 카논카메라	日本橋梁・天辻鋳球・ (鐘測機械)・月島機 械・東洋베어링	東洋電機 岩崎通信機 富士車輛 다이하쓰工業
日産化学 日本油脂		大阪曹達・徳山曹達 積永化学・川崎化成 日本페인트	関西파인트
	片倉工業	大和紡績・帝国人絹・ 日本레이온	日本纖維工 業
日産建設・日本 冷蔵・日立세멘 트 力産業会	大成建設 国策팔 프 京亜燃料	大林組 丸善石油	
	丸紅飯田 大倉商事	日綿実業 岩井産業	
日産汽船	協立汽船 日本汽船 日本油槽船	山下汽船 新日本汽船	
日産農林 日本水産			

其四

	其	
金融	興業銀行・勸業銀行 東京銀行	北海道拓殖銀行・ 大和銀行・東海銀行
鋁業	常磐炭礦・明治鋁業 日鉄鋁業	
金屬	八幡製鉄・富士製鉄・ 日本冶金・同和鋁業	東洋製鐵
機械	新潟鐵工所・池田鐵工 大隈鐵工所・小松製作所	花原製作所・安川重機・ 明電舎・松下電器・ソニー
化學		
織維	郡是製絲・東洋紡・ 大日本紡	日清紡・倉敷紡・ 日東紡
其他工業		
商業不動產	江商・安宅產業・ 三越・平和不動產	東急不動產
運輸倉庫	日本通運 日東商船 飯野海運 大同海運	關西汽船・近鉄・ 東急・名鉄
其他		

他	
神戸銀行・協和銀行 日本火災	
三洋電機・早川電機・八坂電機 日本電機・横河電機	日野自動車・東洋工業・本田技研 富士重工業・理学光学
呉羽紡・日本毛織・ 帝人	倉敷レイオン 旭化成
京阪神・東武・ 京浜・京王	小田急・京城 西武・西鉄

六大資本グループの 株式所持状況 (表2)

グループ (社数)	年月末	(A) 発行済 総株数	(B) 同系会社 持株数	(B/A)	同系金融 機関持株 数(C)	(C/A)	(C/B)
		千株	千株	%	千株	%	%
三井 (44)	34.9	2,068,257	301.739	(11.6)	148,415	(7.2)	(49.2)
	35.9	3,498,587	403.519	(11.5)	192,168	(5.5)	(47.7)
三菱 (40)	34.9	2,418,566	494.934	(20.5)	294,739	(12.2)	(58.7)
	35.9	3,003,881	643.945	(21.4)	384,931	(12.8)	(59.6)
住友 (33)	34.9	1,923,902	362.804	(18.9)	110,528	(5.7)	(30.5)
	35.9	2,487,300	524.305	(21.1)	247,517	(9.9)	(47.2)
第一 (55)	34.9	2,236,355	351.372	(15.7)	86,424	(3.9)	(24.5)
	35.9	2,897,828	426.118	(14.7)	110,032	(3.8)	(25.9)
富士 (40)	34.9	1,781,439	181.589	(10.4)	101,184	(5.7)	(55.8)
	35.9	2,119,343	252.825	(14.2)	131,126	(6.2)	(51.9)
三和 (30)	34.9	1,357,082	96.500	(7.1)	42,562	(3.1)	(44.1)
	35.9	1,896,145	142.399	(7.5)	59,116	(3.1)	(41.5)

(注) 「(C)欄」の同系金融機関は「三井」～三井銀行・三井信託・大正海上・三井生命。「三菱」～三菱銀行・三菱信託・東京海上・明治生命。「住友」～住友銀行・住友信託・住友海上・住友生命。「第一」～第一銀行・第一信託・朝日生命。「富士」～富士銀行・安田信託・安田火災・安田生命。「三和」～三和銀行・大同生命

社長會聯成會社

(表3)

三井	三菱	住友
<p>(五日會 14社)</p> <p>三井銀行 三井信託 大正海上火災 三井生命 三井物産 三井礦山 三井化學 東洋第一 東洋高圧 三井造船 三井船舶 三井金屬工業 三井倉庫 三井不動產</p>	<p>(金曜會 21社)</p> <p>三菱銀行 三菱信託 三菱商事 三菱造船 新三菱工業 三菱日本重工 三菱化學 三菱金屬工業 三菱電機 三菱化學 旭硝子 三菱레이온 三菱鋼材 三菱製鋼 三菱石油 三菱海運 三菱製紙 三菱세멘트 三菱油化 三菱倉庫 三菱地所</p>	<p>(白水會 15社)</p> <p>住友銀行 住友信託 住友生命 住友海上 住友金屬工業 住友石炭 住友金屬礦山 住友電工 日本電氣 住友化學 日本硝子 住友機械 住友商事 住友倉庫 住友不動產</p>
<p>(月曜會 26社)</p> <p>위의 21사에 下記 의 11사가 첨가된다</p> <p>三井建設 三井農林 日本製鋼所 三菱工業 三井精機 昭和飛行機 三井石油化學 北海道炭鐵 東京食品 東洋棉花 제베랄物産</p>	<p>上記以外에 東京海上, 明治生命, 기린麥酒, 日本郵船을 첨가한 社長懇談會도 있다.</p>	

4. 기업집단 = 콤비나-드

1963년 8월 미국잡지 타임지에서 「3대 재벌(三井·三菱·住友)에 속하는 기업은 이미 일본전체의 산업상·상업상의 사업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더욱 더 지배력의 확대를 기도하고 있다」

콤비나-드화의 움직임은 55년에 석유화학공업의 육성대책이 통상성에서 결정되어 여기에 의거하여 석유화학제1기 계획이 착수되면서부터이다. 이때 전국각지에 석유화학센터가 탄생하고 각기 수사의 기업이 집중되어서 콤비나-드를 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콤비나-드는 종래의 트러스트나 콘체른과는 상이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집단이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새롭다는 의미는 어느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타기업집단과 콤비나-드를 구별하는 최대의 특징은 기술적 연관성의 강인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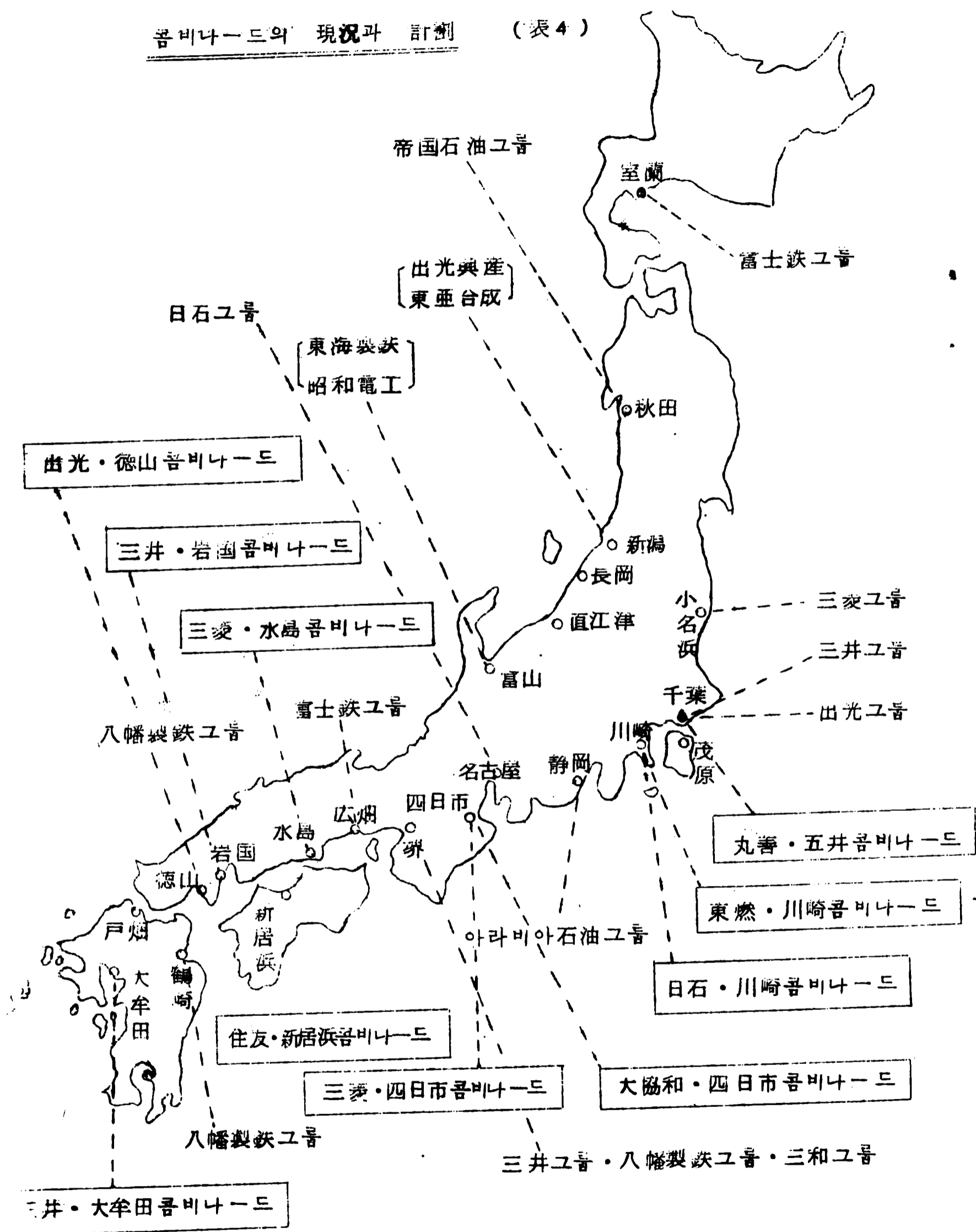
둘째로는 콤비나-드형성에는 방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적 관련성이 표면에 있고 거액의 자본이 요구된다는 두가지 점에서 콤비나-드 내의 기업관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콤비나-드에 있어서 재벌계의 콤비나-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강함이 대단했다. 즉 선발 4콤비나-드 가운데 日石系를 제외한 3콤비나-드는 三井·三菱·住友의 재벌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住友는 소위 기업내콤비나-드로서의 강력성을 자랑하고 있다. 또 재벌계는 선발 4콤비나-드 가운데 3개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후 나아가서 제2콤비나-드에의 진출을 실시

하며 계획하고 있었다. 이외에 富士銀行系列의 진출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콤비나-드의 진출에 있어서 재벌계나 계열콤비나-드의 진출이 현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콤비나-드의 또하나의 특징은 三井石油化学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회사설립에는 三井系各社가 일치하여 자본참가를 하였다. 즉 三井鉱山·三井化学·三池台成·三井金礦業·東洋高圧·東洋레이온·三井銀行·興亜石油가 투자했고 三井物産·三井造船·三井生命·大正海上·三井信託銀行등도 각기 출자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三井재벌의 총결집을 여실히 나타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비단 三井콤비나-드에 그치지 않고 三菱재벌계에서도 볼 수 있다. 즉, 三菱油化는 三菱系 10수사를 결집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리하여 계열콤비나-드가 증가하고 재벌계는 점차 그 강점을 발휘하여 오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집단이 철강·전력·석유등 구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에서 우선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고 지금은 구 재벌을 구재벌형태도 부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는 것과 구 재벌계의 기업집단도 각기 축적된 힘을 발휘하여 새로운 기업집단으로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확실히 재벌은 무활했다. 그러나 그 재벌은 종래와 같이 봉쇄적이고 만능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술적 기초에 의거한 거대기업으로서 형성되어 있고 또 그 기업마저 일본국내에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과의 제휴로서 맺어져 있는 것이 금일의 실정이다.

콤비나이드의 現況과 計劃 (表4)



5. 군수산업과 재벌

전시중 일본군수기업은 직접·간접으로 거대기업(재벌)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45년 9월말 현재에 三井재벌은 직접 177사들 지배하고 있었다. 종전시 三菱은 76사, 住友는 120사, 安田는 94사, 淺野는 84사 鮎川은 172사들 직접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 8대 재벌산하의 불입자본금은 일본전국의 회사의 불입자본금의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 용자관계·하청관계 등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무수했다. 특히 중화학공업 부문은 압도적으로 재벌의 지배하에 있었다. 패전후 연합군이 재벌을 전쟁이외에는 존립할 수 없는 경제조직으로서 규정하여 해체를 행한 것은 결코 이유없는 짓은 아니었다. 전후 G.H.Q에서 무엇보다 먼저 재벌의 장악하에 있었던 일체의 병기·탄약 및 군용기재의 제조 및 분배를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재벌하체의 실태는 기술한 바와 같이 불철저했다.

재벌해체의 종결을 이미 47년말경부터 시작했다고 본다면 일본군수산업의 부활도 대략 이즈음부터의 일이다. 즉 미국은 긴 안목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장차의 아시아의 방벽으로 내다보는 견지로 정책을 전환한 듯이 보여진다. 다시말해서 일본경제생활전체에 대한 재벌의 관계들 고려하는 한편 매상분제의 사실상의 중지도 48년중엽에 이루어진다.

○ 25동란은 일본경제에 있어서나 재벌 나아가서 군수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란으로 말미암아 미군이 일본으로부터

배상한 特需은 전쟁개발일자로부터 8월 28일까지 약 2개월에 무려 144억円에 달했다. 9월 말에는 그것은 348억円에 달했다.

그후 53년말까지의 3년반사이에 일본이 特需에 의해 취득한 수입은 약 24억달라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전의 최화는 일소되고 광공업생산은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特需은 처음부터 본래의 의미의 군수품(병기)에 대한 발주는 근소했다. 그러나 동란이 계속해감에 따라 군수산업의 주체는 점차 대기업으로 옮겨 갔고 50년에서 53년사이에 特需계약의 10대사는 小松製作所(住友系)·神戸製鋼(第一系)·大阪金屬工業(住友系)·旭化成(住友系)·日平産業(住友系)·日本建鉄(三菱系)·住友金屬工業·大同製鐵(富士系)·大阪機工 등으로 되어 이들 기업은 거의가 직접재벌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이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일본의 特需은 감소하고 군수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계열외에 있었던 기업은 자금회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전쟁후에도 존속할 수 있었던 기업은 재벌계열하에 있는 기업이 대다수였고 그리하여 대기업자신에 特需가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이 55년이후 일본에 있어서의 병기국산화의 소지를 닦는데에 기여했다.

선후 일본군수산업의 제2단계는 54년 체결된 M.S.A 협정에서 구획지워진다. 왜냐하면 동협정에서는 日本은 직접 및 간접침략에 대해서는 자국방위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원조로서 공급되는 농산물 매각대금은 방위생산 및 농업력증강

에 사용되어야 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러한 약속에 의거하여 군비증강의 조치로서 방위2법(방위청 설치법, 자위대법)이 시행되고 자위대의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동시에 자위대 발족은 여기에 비로소 처음으로 스스로의 병기를 자국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4년에서 56년초에 이르는 동안 방위생산위원회·병기위원회 혹은 자유민주당안에 방위생산연락협의회등 높은 기관이 설립되고 항공기공업의 육성·탄약생산의 증강, 방위생산의 정비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결같이 군수사업의 육성을 요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망의 선두에는 방위생산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주멤버로서는 三菱重工등 재벌계 대기업의 참가가 있었다. 내기업을 위신한 기업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마침내 장기방위계획을 작성했다. 이것이 第一次防衛力整備計劃(58년~60년도)이다. 第一次防衛力整備計劃은 소요경비에 정금액을 4530억円で 잡아 충분한 경비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이것으로서도 장비국산화는 일보 전진할 수 있었고 58년도를 경계로 하여 방위청국내조달액이 特需를 증가할 수 있는 모멘트를 제공했다. 항공기 생산·함정·잠수함생산이 개시되었고 이런 병기능은 자본과 기술면으로서도 중소기업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워 대기업에 생산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第一次防衛計劃은 장비국산화·군수생산체제의 확립에는 불충분하였다.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적인 군수품조달과 국산화계획을 포함시킨 장기방위계획이 필요했다. 第二次防衛力整備計劃은 62년에서 66년도까지 약 11,500억円~

11800억円の 경비로서 방위력의 증강을 피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第二次防에 있어서는 産業經濟側面에서 말한다면 대기업의 요구가 강렬히 반영되어 장비의 국산화를 내걸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즉 経団連防衛生産委員会와 自由民主党・政府機關의 代表・삼자로서 구성된 防衛産業國産化懇談회를 설치하여 목하의 급무로서 방위산업의 국산추진이 요청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장비 국산화를 第二次防의 중점항목으로 하는 동시에 장기일괄발주·계약 선불제도 등을 채용하여 산업층의 많은 요구를 받아 늘였다.

돌이켜 보면 방위산업은 6.25동란의 特需에서 본격적인 군수 생산으로 이행하고 조달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기업(=재벌계)은 군수산업에 직접진출하여 생산의 핵심이 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한 통계로서 살펴본다면 55년 이래 500萬円이하의 계약은 매년 감소해가고 있는데 비해서 1000萬円이상의 계약은 54년도 7.6%에서 61년도는 15.2%로 2배이상 증대하고 있다. 그중 1억円이상의 계약은 같은 기간 0.6%에서 2.4%로 약 4배 증가되어 대기업의 계약이 증가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2.4%는 금액으로서 692억원에 해당되며 금액은 전체의 61%를 점하는 비중이다.

그리고 57년이후에는 6.25동란중 주역을 맡았던 기업은 小松製作所를 제외한다면 모두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고 군수산업은 완전히 6거대기업에 집중됨을 볼 수 있다. 65년도의 방위청 조달 등록업자는 제조 1070사, 구입 262사, 계 1332사였는데, 유자격자의 1%이하의 대기업이 계약금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

있다.

수량적으로 본다면 일본정부의 방위비나 방위 산업은 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떤 학자의 비유를 빌린다면 100사의 거대독점기업이므로 이 가운데의 대기업이 방위수주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방위수주는 이들 기업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일본산업의 밑바닥에는 이미 군수산업은 정착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재벌의 부활, 그것은 결코 단순히 구형태의 재벌의 부활은 아닐지라도 재벌은 군수산업분야에서도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속임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防 衛 関 係

事 項	1963年度 (当初)	1963年度 (当初)		1964年度 (当初)	
	豫算額	豫算額	増加額 (増加率)	豫算額	増加額 (増加率)
国民総生産 (A)	211,897	247,262	35,365 (6.7)	285,857	38,595 (15.6)
国民所得 (B)	172,150	199,808	27,658 (16.1)	225,802	25,994 (13.0)
一般会計豫算額 (C)	24,268	28,500	4,232 (17.4)	32,554	4,054 (14.2)
防衛関係費 (D)	2,085	2,412	327 (15.7)	2,751	339 (14.1)
防衛庁費 (E)	1,974	2,271	297 (15.1)	2,597	326 (14.4)
施設運営等関係諸費	79	103	23 (28.8)	113	10 (9.7)
軍事援助顧問団経費	3	3	0	4	1
防衛施設市費	29	35	6 (20.7)	37	1 (9.1)
防衛関係費 (D) 国民総生産 (A)	0.98 %	0.98 %		0.96 %	
防衛庁費 (E) 国民総生産 (A)	0.93	0.92		0.91	
防衛関係費 (D) 国民所得 (B)	1.21	1.21		1.22	
防衛庁費 (E) 国民所得 (B)	1.15	1.14		1.15	
防衛関係費 (D) 一般会計豫算額 (C)	8.59	8.46		8.45	
防衛庁費 (E) 一般会計豫算額 (C)	8.13	7.97		7.98	

(注) 増加額 (増加率) は 対前年度 増加額 (対前年度 増加率) による

貸 引 推 移

(单位:億円)

1965年度 (当初)		1966年度 (当初)		1967年度 (当初)		1968年度		1969年度	
豫算額	増加額 (増加率)	豫算額	増加額 (増加率)	豫算額	増加額 (増加率)	豫算額	増加額 (増加率)	豫算額	増加額 (増加率)
313,492	27,635 (9.7)	367,015	53,122 (16.9)	431,167	64,152 (17.5)	505,700	74,533 (17.3)	578,600	72,900 (14.4)
250,137	24,335 (10.8)	292,492	41,978 (16.8)	345,889	53,447 (18.3)	379,000	33,061 (9.6)	458,000	79,000 (20.8)
36,581	4,027 (12.4)	43,143	6,562 (17.9)	49,509	6,366 (14.8)	58,186	8,677 (17.5)	67,396	9,210 (15.8)
3,014	263 (9.6)	3,407	393 (13.0)	3,809	402 (11.8)	4,221	412 (10.8)	4,838	617 (14.6)
2,831	234 (9.0)	3,197	366 (12.9)	3,575	378 (11.8)	3,970	395 (11.0)	4,537	567 (14.3)
139	27 (23.9)	163	23 (16.4)	182	19 (11.7)	195	13 (7.1)	239	44 (22.9)
4	0	4	0	4	0	4	0	2	△ 2
40	3 (8.3)	43	4 (10.2)	48	5 (11.6)	52	44 (8.3)	60	8 (12.9)
0.96 %		0.93 %		0.88 %		0.83 %		0.83 %	
0.90		0.87		0.83		0.79		0.78	
1.20		1.16		1.10		1.11		1.05	
1.13		1.09		1.03		1.05		0.99	
8.24		7.90		7.69		7.25		7.1	
7.74		7.41		7.22		6.82		6.7	

말함. △印은 減

参 考 文 献

1. 資料 戦後二十年史，経済，日本評論社 1968年
2. 財閥，野田一夫，中央公論社，1967年
3. 日本経済史，榊西光速，お茶の水書房，1961年
4. 日本の大企業，中村孝俊，岩波書店，1968年
5. 安保と経済，毎日新聞社，1967年
6. 安全保障と防衛産業，日本安全保障編集委員会，原書房，1967年
7. 日本の軍需産業，鷲見友好，汐文社，1967年
8. 日本の過当競争，丸山泰男，ダイヤモンド，1968年
9. 日本の産業，日本長期信用銀行産業研究会，毎日新聞社，1968年
10. 太平洋戦争，永三郎，岩波書店，1968年
11. 日本資本地図，安藤良雄，新潮社，1963年

Ⅳ 日本의 國防政策

IV. 일본의 국방정책

1. 국방정책결정과정

1. 국방회의

국방회의는 방위청설치법에 따라 국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내각의 자문기관으로서 1956년 7월에 발족하였다. 이 회의체는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부총리인 내무대신, 외무대신, 배장대신, 방위청장관 및 경제기획청장관을 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에는 관계국부대신 통합막료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시킨다.

법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은 국방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1) 국방의 기본방침
- (2) 국방계획의 대강
- (3) 방위계획에 관련되는 산업등의 조정계획의 대강
- (4) 방위출동의 가부
- (5) 기타 총리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에 관한 중요사항

2. 국방의 기본방침

국방의 목적을 직접 및 간접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내 /

- (1)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의 협조를 도모하여 세계평화의 실현을 기한다.
- (2) 민주를 안정하고 애국심을 고양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 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 (3) 국력, 국정에 대응하여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협의한다.
- (4) 외부로 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장래 국제연합이 유효히 이를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이에 대처한다.

2. 제 1차—제 3차방위계획

제 1차방위에서 제 3차방위에 이르는 방위정비계획의 성격 및 내용을 구명한다.

1. 제 1차방위력정비계획

전술한 국방의 기본방침이 정해진후 이에 따라 당면의 방위력정비목표가 심의되어 1957년 6월에 결정되었다. 이것은 1958년에서 1960년 까지를 내상기간으로 한 제 1차방위력정비계획이다.

제 1차방위력정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육 상 —

사위관 18만명중 주동부대 135,000명 (방면총감부 2, 관구대 6, 혼성단 4, 공정단 1, 특과대대 16, 교사특과대대 8, 특차대대 4, 시설대대 8, 헬리콥터부대) 후방관리대 45,000명
 일반직원 15,000명, 예비사위관 20,000명

-해 상-

함정은 경비함 약 50척, 잠수함 5척, 초계정 26척, 어뢰정 9척,
소해정 66척, 구잠정 22척 기타 계 190척
항공기는 P2V 32대, S2F 60대를 주력으로 하여 약 200대,
인원은 약 34,000명

-항 공-

실용기 900대, 연습기 370대,
부대는 주간전투기 18대, 선천후전투기 9대, 정함기 3대, 수송기
3대, 레이다 24개소, 요지방공 8대대, 인원 41,586명

이상의 목표는 내외정세의 추이에 따라 수시 재검토되는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의 퇴보에 즉응해서 신무기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편성 정비의 쇄신을 도모하고 방위력의 질적 충실을 기한다.

이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는 항상 경제안정에 유의하며 특히 연
차별의 증세에 대해서는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민생안성을 위한 세
시책과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이를 결정한다.

2. 제2차방위력정비계획

제1차계획이 종료한 1961년(36년)초두에서 방위청은 소위 제
2차방위력정비계획의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제1차계획에서 기간인
원등 거이 진용을 정비한 육·해·공 3사위대에 대해서 정비의
근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 기본방침

(1) 미·일안보조약을 기조로 하여 제1차방위력정비계획에서
달성된 골간적자위력을 정비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병기기술의 진보

이 즉응해서 정비의 전반적 갱신과 근대화들 도모한다.

(2) 통신시설 보급정비태세를 정비하고 연료 특히 탄약에 대해서는 약 1개월분의 전시비축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국내보급체제를 강화한다.

— 육 상 —

1966년(41년)년도말 정원을 180,000명으로 하여 13개사단을 편성 외에 예비사위관 30,000명, 지대지 미사일실험대 30형 로켓트실험대를 편성.

지대공의 미사일부대로서 「나이키」 및 「호크」 2개대대를 편성 국산중형전차 131대, 경전차 572대 보유, 기관총, 소총, 차량, 화기를 갱산

「해리콧타」 162대를 증강하고 부대기동력을 강화한다. 항공기는 계 294대보유

— 해 상 —

1966년(소화 41년)까지 노후화한 자위함 25,600톤 대신에 47,360톤(39척)을 신조하고 계 143,669톤(229척)을 보유.

신조함정은 호위함 11척, 잠수함 5척, 연습함 1척, 부실함 1척, 수중익선 1척.

항공기는 대형대잠초계기 P2-V 7대를 계속 생산하는외 계 235대를 보유하고 대잠 해리콧타기로서 大湊, 舞鶴, 小松島, 大村의 육기지를 정비한다.

— 항 공 —

1966년(44)도말 보유기는 1,036대로 한다.

F-104 전투기 7 비행대를 편성한다.

반자동식경계 관제조직을 건설하고 방공체제를 확립한다.

3. 제 3차방위력정비계획

1966년 11월 제 3차방위력정비계획의 대강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기간은 1967년도에서 1971년도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국방의 기본

일본국의 국방은 「국방의 기본방침」(1957년 소화 32년 5월 20일 각의결정)에 의거 근린제국과의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국제긴장의 완화를 도모하는 등의 외교시책과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정제시책등과를 강구함과 동시에 일·미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유효한 방위력을 정비하고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수호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계획의 방침

(1) 일반계획

일본이 정비한 방위력은 통상병기에 의한 국한전이하의 침략사태에 대하여 가장 유효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 3차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현재의 방위력을 기반으로 하여 내외의 정세, 국력의 신장, 국제적지위의 향상을 감안해 가면서 육·해·공 자위대의 내용의 충실 강화를 도모한다. 또 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장비의 근대화 및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비의 적절과

국산을 행하며 방위기반의 배양에 노력한다.

(2) 주요정비목표

제 3차방위력정비계획에 있어서 주요정비목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육상자위대관계

자위관의 편성정수를 18만명으로 한다.

기동력을 향상시키고 방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리콥타 및 장갑차 및 지대공유도탄부대를 증강함과 동시에 신장비의 도입을 행하여 장비체제를 개선하고 전차, 대전차화기의 갱신 증강을 행한다.

② 해상자위대관계

호위함, 잠수함등 각종 함정의 증강 근대화를 기도함과 동시에 실고성익대잠기, 비행정등을 정비한다.

③ 항공자위대관계

중요지역의 방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대공유도탄부대를 증강하고 신전투기의 정비에 착수함과 동시에 경계관제조직의 자동화를 완성하는 등, 경계관제능력의 향상 근대화를 기도한다.

④ 기술연구개발관계

고등연습기, 레이다, 탑재경계기, 수송기등의 항공기 단거리지대공유도탄등의 각종 유도탄 기타 각종의 장비 기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행함과 동시에 기술연구개발체제를 강화한다.

(3) 계획의 실시

제 3차방위력정비계획은 나라의 경제력의 신장에 대응하여 나라의 타의 시책과 조화실시하는 것이며 각년도마다의 예산은 그때의 경제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타의 일반 제시책과의 균형을 고려 결정한

내
2

다.

이상의 정비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액 2조 3,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3. 각 정당정책의 비교

각정당이 지금까지 발표한 「안보장기구상」을 대별하면 자민당의 「일·미안보체제지지론」과 민사·공명 양당의 「안보체제의 조건부론」 사회·공산 양당의 「안보폐기론」의 3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당내의 정세를 조사해 보면 이러한 장기구상이 무뎠을 때까지는 특히 자민·사회 양당내에서는 활발한 당내논쟁이 있었다. 여기서는 각당의 장기구상 또는 안보정책의 개개에 대해서 그 요점을 각당의 정책비교로서 별지 도표로 이를 표시코자 한다.

(별 지)

(각 정 당 정 책 의 비 교)

	안전보장관	수호할대상	중공의위협	미·일안보체제에의태도	미국의핵우산	군축에의태도
자 민	힘(힘)의 균형 지역적집단안보 체제에 의한 전쟁억지, 「좌파」 비군사적 수단 에도 관심	국가·국민 역사와 전통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심리적위협 「우파」 간접침략중시 「좌파」 외교적노력에 관심	지 지 「우파」 1970년이후 10년고정화 「좌파」 자동연장	의 존	핵을 포함한 현실적인 군축 의 실현에 노력
사 회	군사력에 의하 지 않는 평화 보장체제	국토·국민 「독점자본의 지배체제타파」	인정치 않음	안보폐기 중·소등과의 불가침체제, 중립주의	반대 아시아 비핵 무장지대	전면 완전군축 과 핵병기 전 폐
민 사	다각적 평화외 교, 자주방위가 주, 집단안보는 중	국가·국민 민족적 공동 사회	심리적위협 과대평가하지 않음	근본적개정 주류없는 안보	당면인정함 복수국에 의 한 핵보장	비핵보유국이 일치해서 핵 산방지와 핵보 유국의 핵군축 요구
공 명	절대평화주의 무력에 의하지 않는 평화해결	국토·국민 세계민족주의	심리적위협	10~20년목표 로 단계적 해 소	사실상 인정 핵병기 전폐 에의 노력	전면 완전군축 과 핵병기전폐
공 산	독립이나 종속이냐의 관 점	인민 공산주 의	인정하지 않음	안보즉시파기 일본중립화	반 대	전반적군축협정 핵병기전면금지

정 책 의 비 교)

계	미국의 핵우산	군축에의 태도	자주방위력	핵 장 비	미군주류외기지	방위성의 성격	군연군에의 협력	군민적합의
후과	의 존	핵을 포함한 현실적인 군축의 실현에 노력	자주방위력증강 3차방추진	행하지 않음	「우파」 억지력으로서 필요 「좌파」 점감도고려	찬 성	국연감시단에의 참가고려	「우파」 미일안보견지에의합의 「좌파」 강 조
	반대 아시아 비핵무장지대	전면 완전군축과 핵병기 전폐	자위대는 위헌, 국민경찰대에 개편-해체	행하지 않음	전쟁에 휩쓸릴 위험 전 패	반 대	국연경찰대에의 참가는 금후의 문제	관심회박
보	당면인정함 복수국에의 한 핵보장	비핵보유국이 일치해서 핵확산방지와 핵보유국의 핵군축 요구	규모확대를 억지하고 질적기능정비	행하지 않음	미군상시주류의 배제와 기지의 원칙적 철폐	반 대	상설국연경찰군의 설치	강 조
표해	사실상 인정 핵병기 전폐에의 노력	전면 완전군축과 핵병기전폐	단계적해소 당분간 현상 그대로	행하지 않음	현행조약하에 점감	반 대	국연경찰군의 상설, 아시아지부	강 조
	반 대	전반적군축협정 핵병기전면금지	해 산	행하지 않음	전 폐	반 대	국연의 민주적 개조	반 대

1. 대립가운데 공통점

이상과 같은 비교표를 보더라도 미·일안보체제 존속론을 주장하는 자민당과 안보폐기론을 주장하는 사회당, 공산당과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안보보장에 관한 각정당의 구체적인 정책도 이와 같은 기본이념의 상이를 반영해서 일치점은 적다.

민사·공명의 중간정당은 1970년에 있어서의 국논의 분열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히 안보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민·민사·공명의 3당간에는 미·일안보체제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의 공통의식이 인정되나 사회당과의 「갭」을 좁힌다는 것은 가장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당과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해서 전연 공통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암택희일(岩沢喜一) 經企庁장관은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 1. 현행헌법의 테두리안에서 생각한다는 것. 2. 핵병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3.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한다 라는 3점에 관해서는 거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위대에 대해서는 사회당의 비무장론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공통기반이 이룩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외에도 국연의 평화 기능의 강화, 핵을 포함한 군축에의 노력 등 각당의 목표는 일치하고 있다.

또 각당 사이에는 국회의 방위관계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방위위원회를 만든다면 여기서 법률안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당은 오히려 자위대의 활동

을 엄중히 감시한다는 입장에서 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주장하고 있다.

2. 현실론

민사당이 미·일안보체제의 플러스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일층 명확하게 했다는 점 또 참가학회의 조직력을 배경으로 처음 진출한 공명당이 비무장중립에 반대하여 사실상 안보체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등 중간정당의 안보체제에의 경사가 실질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60년부터 적극 소극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일안보체제의 효용」은 사실상 인정하고 현실주의가 우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자민당내에서도 小坂시안에서 나타난 「국민적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그 관점에서 혁신파의 대결을 대화로서 일치점을 찾아 내어야 한다는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안보논쟁의 성과의 하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핵병기와 국민여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1970년의 시점 혹은 1970년대에 「핵병기」에 대한 국민여론이 과연 어떠한 추이를 가져오느냐 라는 문제이다.

앞서 표시한 바와 같이 각정당의 정책은 현상로서는 「핵병기는 보유하지 않고 또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뉴욕크 타임즈의 「솔 스페리」 기자는 1966년 8월 19일부 일본시찰의 인상기에서 「일본은 원하던 하지 않던 재군비의 방향으로 그리고 핵병기보지

10
3

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것 같다. 일본의 공업생산고는 1970년으로 세계제 3위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또 동년 9월하순에 일본에 간 미국의 전략연구가 「하만·칸」씨(하드슨연구소장)도 마찬가지로 「세계제 3위」에 달한 후의 일본의 경제력 활동력이 풍부한 국민성 전후파세대의 증가등에서 1972년에서 1975년에 걸쳐 일본이 핵병기보유로 향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또 일본은 20년 이내에 현재의 미국의 생활수준에 달할 것이고 1975년경에는 미국에 국방을 100% 의존하기에는 너무나도 대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주역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1975년 이후에는 「3세효과」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세 즉 전전과는 일본의 정치 사회면의 리더역에서 후퇴하고 2세 즉 전후에 대학출신자가 40대 50대로 지도자가 되고 전후출생자가 대학을 나오고 실사회의 중견이 된다. 즉 이 3세는 좋은 의미에서의 조국애, 나라에의 애착심을 가지고 국제적인 시야에 서서 일을 생각한다(잡지 「국방」 41년 10호 특별회견기)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대국화와 세대교체에서 볼때 1975년경에는 일본은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보유하더라도 하등 무방한 국제정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견해는 원폭피해의 유일한 일본국민으로서 「핵병기반대」의 국민감정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는것 같이 느껴지나 그러나 자민당의 구군인 그룹 가운데는 미래의 문제로서 전략핵병기는 미국에 의존하나 소형화한 전략병기의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시기가 도래할런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사상을 반영해서 자민당안보조사회중간보고의 보파시안 가운데는 「일본에 핵무기의 수입을 즉각적으로 핵공격에 결부시킨다거나 이를 최악시하는 관념을 피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뭐니해도 외부로부터의 관찰자의 눈에는 미래의 핵무장에의 가능성은 없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정세의 흐름이 이를 증명하게 될 것이고 일본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중공과의 대립을 앞에 두고 대공정책을 펼쳐 주도적인 역할과 임무를 담당해야할 숙명적인 위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 1969년도 국방백서

방위청은 자주방위의 추진에 따라 일본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일본의 방위」라는 「국방백서」를 작성하였다. 국방백서의 구성으로서, 서론, 총론, 각론의 3분야로 나누어 총론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극동의 군사정세 전략적 지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방위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위의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헌법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자주적인 방위노력을 하면서 방위력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취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방위력정비의 방향으로서

1. 간접침략에 대처하는 방위력
2. 소규모의 무력분쟁에 대처하는 방위력
3. 국지전에 대처하는 방위력을 들어 전면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미국의 핵보복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명백히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원안총론을 중심으로 검토기로 한다.

1.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필요성

1) 극동에 있어서의 군사정세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동서양진영의 병력배비의 상황을 개관하면 전반적으로는 공산진영측이 우세하며 특히 육상병력 잠수함 항공기의 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에 대하여 자유진영내의 극동제국은 육상병력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강력한 전략보복력과 기동지원병력을 그 배경에 가지고 있다.

중공은 7억 94만인의 인구나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중공의 주력은 육군이며 그 세력은 약 150개사단 약 250만명(그외에 보안 국경경비원 약 30단명이 있다)이며 해군은 함정 약 900척 약 20만톤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함정은 잠수함 33척외는 어뢰정 연안호위함 등 소형함정이 주력이다. 또 해군에 약 2만 8천명의 해병대가 있다.

공군은 항공기 2,500기(그외 해군지휘하에 있는 약 500기의 항공기가 있다.)가 있으나 구식의 영식전투기가 주력이다. 중공의 핵무기 및 그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는 1964년 10월 제 1회의 원폭실험 이래 1968년 4월까지 8회의 핵실험을 행하고 표준형원폭(20킬로톤 내외) 200킬로톤 급의 강화원폭 3매가톤급의 수폭의 3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966년 후반부터 탄도 “미사일”의 시사를 행하고 있으며 사정 2,000킬로그램의 탄도 “미사일”을 이미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욱 대륙간탄도탄(ICBM)에 대해서는 1970년 내로 시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내다 보고 있다.

더욱 중공은 “미사일” 적제잠수함 1척 (소련의 G형) 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은 1968년에는 정규군의 총병력을 322만명으로 하고 육군은 약 200만명 140개 사단으로 극동에는 약 24만명 약 17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다. 해군은 총톤수로는 세계 제2위이며 그 주력은 잠수함대이고 약 330척의 재래형 동력잠수함과 약 50척의 핵동력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핵잠수함중 약 13척 재래형동력잠수함중 약 30척은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핵동력잠수함 가운데 약 25척 재래형동력잠수함 20척은 사정 약 500키로의 대선순항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다. 그중 극동에는 함정 약 600척 약 60만톤이 배비되고 그중 잠수함은 약 100척이다. 미사일 적제잠수함은 대부분이 북양함대와 극동함대에 배비되고 있다. 항공기 약 12,000대중 극동에는 약 2,000대가 배비되어 있다. 이 외에 전시로켓트 ICBM, IRBM, MRBM의 부대가 약 50,000명 있다 한다.

MRBM은 약 1,800키로 IRBM은 약 3,200키로 이상의 사정을 가지고 소련의 서부 동부국경부근에 전개되어 서구 일본 및 중국의 비행장과 같은 대부분의 전략적 및 준전략적목표를 「커버」 하고 있다고 한다.

소련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일본근해 또는 주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는 제2차대전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현제도 38도선의 군사경계선의 양측에 비무장지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북괴측의 무장공작원 및 병사가 비무장지대 및 경계선을 넘어 남침을 한 사건은 1967년 이후 격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무장 「개리라」가 침입하고 있다. 또한 동년 1월에는 미국의 선박이 나포되었으며 4월에는 미정찰기가 북괴전투기에 격추된 사건이 일어났다. 북괴의 육군병력은 약 35만명(19개사단) 해군은 함정 약 180척 15,000톤, 공군은 약 600대로서 전병력 약 38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이 모두 소련제의 병기로서 장비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총병력 약 62만명이며 육군은 약 55만명(29개사단) 해군은 함정 약 80척 해병대 약 30,000명 항공기는 약 3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2. 일본의 안전보장의 방책

1) 안전보장의 대상

국방의 기본방침으로서 국방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일본국의 독립과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다.

자위대법으로서는 자위대는 「일본국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하고 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 한다는 것은 우선 국가 및 국민의 생손을 수호 한다는 것이다. 즉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나 침략 또는 간섭을 배제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토를 타국으로부터 점령당한다던가 파괴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고 행동의 자유등을 수호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라의 발전 국민의 번영의 기초조건인 정치체제 경제 사회체제등

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로 일본 헌법에 정해진 제체제와 그 기본인 민주주의이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주권이 선거된 의회를 통해서 행사된 의회제 민주주의이며 둘째로 의회제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권의 존중이다.

세째로는 이상과 같은 정치 사회체제를 기초로한 국민의 생활양식이며 현재의 일본의 번영을 가져온 경제체제인 것이다.

2)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군사적수단

(방위력의 필요성)

국가로서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할 수단으로서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 일본이 직접 간접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하고 생각되는한 이러한 침략에 대비해서 방위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방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1) 자주방위와 미·일안전보장체제

일본은 무엇때문에 중립 또는 비동맹정책을 취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립정책 또는 비동맹정책에 의해서 일본을 방위한다는 것은 가장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지리적 지형적조건 전략적지위등으로 보아 중립유지에 필요한 조건에 합치될 수는 없으며 중립유지는 곤란하다는 점

(2) 일본의 통제력 공업력등은 동서간의 힘의 균형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서방측의 진영에서 격리되어 중립으

로 되면 동서간의 균형은 파괴되고 극동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3) 중립정책 또는 중립주의를 취하면 상당규모의 방위비를 가져야 한다. 무장중립을 취하게 되면 방위비가 상당한 정도로 증대하고 그 방위비의 압박으로 국민생활은 저하되고 경제의 건영 복지국가의 건설도 어렵다는 것이다.

(4) 일본은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국토가 좁고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천연자원의 혜택이 적기 때문에 외국무역에 의존 외에 살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활동은 해상수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자유주의제국과의 무역이 9할 정도 미국과의 무역이 3할정도이다.

만약 일본이 중립화했을 경우 자유진영과의 무역은 상당히 후퇴한다는 것이다.

(5) 중립에는 전술한 중립 또는 비동맹과는 달라 본래는 공산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 정책적 전략적으로 중립을 부르짖는 주장이 있으나 일본으로서는 동조하지 못한다. 이러한 입장의 중립은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민주적인 정치사회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중립이나 집단안전보장이냐를 선택 하는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3. 방위력

1) 비상사태의 양상

(1) 간접침략

간접침략은 국내에 있어서 내부붕괴등의 제공작을 행하고 따라서 내란 소요를 야기시키고 이를 확대시켜 대규모의 것으로 하여 일부 무력공격을 병행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일본의 지리적조건 폭력을 수반하는 각종반대투쟁등 국내정세등으로 보아 간접침략을 야기시킬 위험성 있는 잠재적요소는 적지 않다 천재지변 경제적혼란 등 불측사태의 발생등을 계기로 「재네스토」등을 병용하여 간접침략이 일어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① 위선 예상되는 것은 어업분쟁 영해 영공 침범등에 따라 일어나는 소규모의 무력분쟁 주변 극지전이 부수적으로 과급하여 행해 시는 부분적인 무력공격등 작은 무력공격이다.

② 일본을 직접대상으로하는 무력공격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핵대국이 참가하면 일·미공동방위에 의해서 일본을 지원하는 미국과의 전쟁 즉 핵대국간의 전쟁이며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것이 핵의 무제한 사용이 될 경우 양자모두 자발적행위로 되기 때문에 상호억제작용이 강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는 탄력성있는 전략이 취해져 상호간에 사용하는 병기 전역 목표등을 한정하고 전쟁양상으로 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4. 일·미안전보장체제

1) 일미안전보장체제의 방위상의 의의

(1) 일·미안전보장체제와 일·미협력

이 조약은 국연헌장테두리안에서 연결된 것이며 일미양국은 헌장

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 행동한것 국인의 강화에 노력할 것을 명백히하고 있으며 국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때에는 이 조약은 동력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의 정신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일미공동방위장치는 현장이 규정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의 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순수한 방위적인 것이다. 따라서 일미안전보장체제를 군사동맹이라는 자가 있으나 군사동맹이라는 말의 내용이 제2차대전 이전에 있어서 각국의 성채동맹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명백히 다른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2) 안전보장체제와 억지력

일본에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일미양국이 공동으로 이에 대처할 것을 정한 것이다. 즉 외국으로 부터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힘으로 되어 있다. 핵병기의 공격에 대해서는 전연 무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 밖에 별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을 공격하는 나라는 미국의 보복력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일본을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일미안전보장체제와 방위비

국방은 안전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의 배경이 없이 일본 1국만으로서 독립을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낮은 방위비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립국인 스위스 스웨덴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위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 총생산에 접하는율은 2.4%, 3.9%인데 비해

일본은 0.9%밖에 안되는 것은 일·미안보조약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 소화 10년에서 17년까지 일본의 군사비는 일반회계의 평균 70.2%를 집해 국민생활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6조 7,395억원에 달한 소화 44년도 일반회계 예상가운데 방위관계비는 4,838억 원이며 전체의 7.18%에 불과하다. 소화 30년수준 43년에 이르기까지 일본경제가 년율 약 10%의 높은 성장을 계속해온 것은 일미안보체제하에서 일본의 방위비가 최소한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2. 일·미공 동방위체제

1) 상착육침공에 대해서는 초기에 미군의 원조가 늦어져도 어느 기간동안 침략자에 지역점령등의 기성사실을 만들게 하지 않는다.

2) 해상방위에 대해서는 나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상수송량을 확보한다.

3) 항공침공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항공우세를 확보한다.

- | | | | |
|---------------------------------|-------------------------|-------------|-------|
| 17. 現代日本の政治 | 石井金一郎 著
山田 浩 | 法律文化社 | 1967年 |
| 18. 素顔の自衛隊
(日本の平和と安全) | 毎日新聞社編 | | 1968年 |
| 19. 昭和史 | 遠山茂樹
今井清一 著
藤原 彰 | 岩波新書 | 1969年 |
| 20. 日本帝国主義の形成 | 井上清著 | 岩波書店 | 1968年 |
| 21. 戦後日本政治史1.2.3
(1945~1952) | 信夫清三郎著 | 勁草書房 | 1967年 |
| 22. 回想の日本外交 | 西春彦著 | 岩波新書 | 1968年 |
| 23. 資料・戦後20年史 6巻 | 遠山茂樹編 | 年表
日本評論社 | 1967年 |
| 24. アメリカの東南アジア政策 | RH Fifield 著
鹿島守之助 訳 | 鹿島研究所 出版会 | 1965年 |
| 25. 防衛実務小六法 | 内外出版 K.K. | | 1969年 |

V 韓國 國防 外交政策의 方向

V. 한국의 국방·외교정책의 방향

1. 한국의 국방·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유진영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한다는 원칙아래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록 우방이라고 하지만 1965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국 관계는 미묘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타우방과 같은 양국관계는 지속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60년대의 아세아정세의 급변과 함께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노력은 드디어 관계개선이라는 타결을 65년에 보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연구분석은 종전과는 달리 급진적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본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교육할 것 없이 종합적인 분석을 요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히 본연구에서도 전후의 군세력을 가능한 한 분석 검토했는바 그곳에서 얻어진 결론은 한국통란을 계기로 하여 재군비의 실시와 함께 대두된 군세력은 60년대까지는 일본의 외교정책은 물론 일반정책에 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장차 군세력의 발언권은 점차로 강해질 것이며 더우기 70년내에 가서는 국방정책을 포함한 일반 외교정책은 상당히 그 지위가 커지리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 ① 1970년대의 일본의 과제가 바로 안보에 있다는 일연의

상황이라 군사력없는 안보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군의 강화는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전시방위계획(1차방 4차방)에서나 특히 앞으로 제2의 한국동란을 가정한 소위 3실작전 등은 그것을 뒷바침해주고 있다.

② 미국의 아세아정책의 수정에서 오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서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은 주지하는 대로 근년에 와서 극동을 포함한 아세아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이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닉슨」 독트린에서도 역역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정책의 변경은 결과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아세아에서의 미국의 책임과 위치를 대행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변경은 바로 힘의 증강으로 가능한바 일본군대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될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미국의 일본군대 강화를 위한 배려도 고려될 수 있다.

③ 전술의 분석대로 지금의 자위대의 성격과 (물론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밖에 구군인의 동태 또한 좌익단체들의 재활동등은 앞으로의 군부 세력의 강화를 위한 일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며 특히 재벌의 군세력과의 제휴가능성도 아울러 주목되는 것이다.

2. 이렇게 분석할때 앞으로의 군세력은 점차로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군세력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런데 먼저 전제되어야 할것은 새로히 대두·강화되는 군세력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분석문제이다. 앞의 결론에 의하면 구군벌과 같은 성격은 아닌것이 사실이나 점차 군부의 발원권이 증가되리라는 결론이고 보면 적어도 일본의 외교·국방정책

정도에도 크게 영향이 끼칠것이라 본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일본군세력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하고도 철저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① 새로운 군세력과 그 주변의 협력기구등에 대한 제반 조정 분석이 긴급하게 요청되며

② 군사정책 국방정책에 대한 정확하고도 장기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③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방제국과 일본군부와의 동태에 대한 불단한 연구가 아울러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우리의 연구 분석을 위한 대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군세력의 강화 및 그의 동향은 바로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이면서도 다각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금도 정경분리의 원칙이라는 외교적 수사아래 공산권과도 교역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적·외교적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 군부의 대응은 더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3. 70년대 아세아의 일반정세의 기본성격은 별로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월남전쟁의 종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전쟁불안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현재의 힘의 대결을 위한 상관관계 역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단 미국의 변경된 대아정책이 실시되는 날에는 일본의 위치가 상승될 것만은 사실이요 앞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아세아의 지도국이 될것만도 확실하다. 이와같은 일본지위변경

에 수반하여 힘의 강화는 불가피하며 그것은 바로 군세력의 강화를 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군사력은 또 다시 아시아에서 제 2차대전전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와같은 일본의 군력강화라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 외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① 외교적인 주도권을 항상 유지하면서 한국의 위치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군사행동에 있어서의 주도권도 아울러 유지되도록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Aopac 같은 기구의 효과적인 활용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하겠다.

② 한국의 안보를 위한 완벽한 국방정책의 수립에 요망된다. 새로이 대두하는 일본군세력의 동향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아시아의 군사적 측면의 력관계를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본의 군장비에 대처한 한국군의 현대화도 시급한 일이며 맹방미국과의 세대강화는 물론 일본의 군사정책에 대비한 장기적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방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대일 관계를 포함한 방위구상도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한국의 통일과 관련하여 분석할 때 전술한 대로 일본의 발언권이 세계정치 특히 아시아정치에서 높아진다면 그것은 한국통일에도 영향을 줄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70년대의 한국정치 외교의 과제의 하나가 바로 통일문제라고 할진대 불단히 외교적인 활동을 통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우리의

正 誤 表

頁 . 行	誤	正
9頁 上 3行	軍国化	軍閥化
13頁 上 4行	준	군
14頁 下 10行	現役制 페지물	現役制의 페지로
14頁 下 8行	寵兒	寵兒
16頁 下 9行	특색이 고	특색이 있고
21頁 上 7行	改造運動	改造運動
23頁 上 2行	下 上	下剋上
29頁 13行	「그것은 前述과 같이」	削除
〃頁 14行	非軍事化요	非軍事化였다
〃頁 〃行	「民主化라는」	削除
〃頁 〃行	두가지	이 두가지
30頁 12行	措置	措置는
34頁 7行	衆議員	衆議院
〃頁 8行	參議員	參議院
34頁 〃行	分 布	公 布
34頁 21行	軍備였나	再軍備였다
35頁 1行	문제	문제
35頁 5行	占領政策에	占領政策變更에
39頁 9行	(日沢)	(日譯)
〃頁 10行	注目한	注目할
40頁 7行	길든	갖고있는

頁	行	誤	正
42 頁	12 行	기출한 바와	기술한 바와
" 頁	15 行	確實을	確保를
45 頁	16 行	別表(三)	別表(4)
" 頁	18 行	27 年	1952 年
戰後日本의 財閥			
73 頁	上 2 行	미쓰칸	미쓰칸
74 頁	上 1 行	다	다.
75 頁	上 8 行	1670 전이나.....	1670 전이나.....
" 頁	上 13 行	없다	없다.
" 頁	上 15 行	가져왔다	가져왔기 때문이다.
76 頁	上 1 行	서 면직에서	서는 면직에서
76 頁	上 7 行	대기업 = 재벌의	대기업 = 재벌은
76 頁	上 9 行	중화학공업을	중화학공업을
77 頁	上 11 行	있다	있었다
78 頁	上 4,5 行	자격하게 되는 것이다	자극하게 되었다
79 頁	上 3 行	되었기 때문이다.	되었다는 것이다.
80 頁	上 2 行	이러한 계열화하는...	이러한 계열화라는...
80 頁	上 6 行	있다.	있었다.
" 頁	上 9 行	있다.	있었다.
" 頁	下 4 行	볼수있다.	볼수있는 점이다.
81 頁	下 9 行	더 일종의	더 한종의
" 頁	下 5 行	재벌해체를	재벌해체로
94 頁	上 2 行	타임지에서	타임지는
95 頁	下 7 行	축적된	축적된
97 頁	下 10 行	재벌해체	재벌해체

통일방안이 설득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강력한 국군의 유지와 국내
제분야에서 상항향상은 아울러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우리의 국방 외교를 위한 노력은 U.N 또는 기타의 국제
기구를 통한 제활동은 물론 특히 월남사태처리 뒤에 있을 한일양
국간의 대동남아 내지는 아세아지역회의에 단한 정치·경제면에서의
경쟁에 관한 계획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